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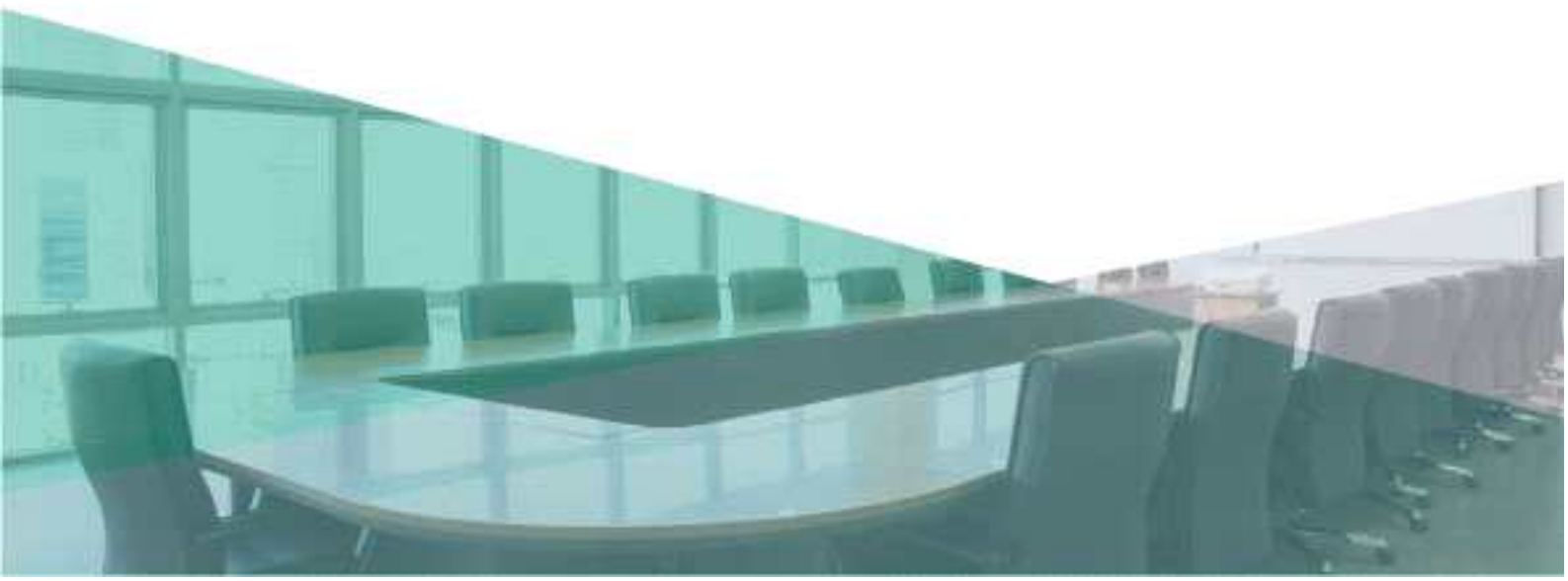


한번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 오산시의회

##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연구회





# 제 출 문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제 윤 의 정



# 【제목 차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7
제2절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제도의 변천 .....	9
1. 선거구 획정제도의 역사적 변천 .....	9
2. 지방의회의원 정수 산정기준 논의 .....	16

## 제3장 오산시 현황 및 선거구 획정 법·제도 분석

제1절 오산시 현황 .....	18
1. 기본현황 .....	18
2. 오산시 현황 .....	19

3. 오산시의회 현황 .....	20
제2절 선거구 획정 법·제도 .....	23
1. 선거구 획정 관련 법령 .....	23
2. 선거구 획정 절차 .....	30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31
제3절 헌법소원심판 .....	33
1. 헌법소원심판 .....	33
2. 헌법재판소 판례 .....	36

## 제4장 타 시도의회 분석

제1절 동두천시의회 .....	41
1. 기본 현황 .....	41
2. 의회 조직구성 .....	42
제2절 부산 중구의회 .....	44
1. 기본 현황 .....	44
2. 의회 조직구성 .....	45
제3절 인천 옹진군의회 .....	47
1. 기본 현황 .....	47
2. 의회 조직구성 .....	48
제4절 여수시의회 .....	50
1. 기본 현황 .....	50

2. 의회 조직구성 .....	51
제5절 경주시의회 .....	53
1. 기본 현황 .....	53
2. 의회 조직구성 .....	54
제6절 강릉시의회 .....	56
1. 기본 현황 .....	56
2. 의회 조직구성 .....	57
제7절 광주시의회 .....	59
1. 기본 현황 .....	59
2. 의회 조직구성 .....	60
제8절 하남시의회 .....	62
1. 기본 현황 .....	62
2. 의회 조직구성 .....	63
제9절 의왕시의회 .....	65
1. 기본 현황 .....	65
2. 의회 조직구성 .....	66
제10절 군포시의회 .....	67
1. 기본 현황 .....	67
2. 의회 조직구성 .....	68

## 제5장 해외사례 분석

제1절 일본 .....	71
1. 지방의회 제도 .....	71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	72
제2절 대만 .....	75
1. 지방의회 제도 .....	75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	75
제3절 영국 .....	79
1. 지방의회 제도 .....	79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	83

## 제6장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제1절 개선방안 .....	89
1.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 .....	89
2. 인구 규모에 따른 의원 정수 .....	91
제2절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	92
1. 오산시의회 기능적 측면에 따른 의원 정수 .....	92
2. 오산시 인구 규모에 따른 의원 정수 .....	93
제3절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 방안 .....	95

1. 선거구 획정 절차에 따른 건의 방안 .....	95
2.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안 .....	95

## 제7장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안)

1. 조직개편안: 사무기구 .....	97
2. 조직개편안: 상임위 .....	99
3. 조직개편안: 중·장기개편안 .....	100
4. 지방의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	101

## 제8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오산시의회 활성화 방안 .....	111
2. 제언 .....	112

참고문헌 .....	123
------------	-----

## 【 표 차 례 】

〈표 2-1〉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	10
〈표 2-2〉 제1-2공화국 지방의회 선거 실시 상황 .....	11
〈표 2-3〉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 정수의 변화 .....	12
〈표 2-4〉 1988년 이후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	13
〈표 2-5〉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의 변화 .....	14
〈표 2-6〉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역별 기초의원 정수의 변화 .....	15
〈표 2-7〉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교 .....	17
〈표 3-1〉 오산시 인구 연령별 현황 .....	18
〈표 3-2〉 오산시 동 현황 .....	19
〈표 3-3〉 오산시 국유행정재산 현황 .....	20
〈표 3-4〉 오산시 국유재산 현황 .....	20
〈표 3-5〉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2,978명) .....	24
〈표 3-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	29
〈표 3-7〉 오산시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	29
〈표 5-1〉 일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	71
〈표 5-2〉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지방의회 의원 정수 상한 수 .....	73
〈표 5-3〉 일본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선거구 .....	73
〈표 5-4〉 직할시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	76
〈표 5-5〉 현시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	76
〈표 5-6〉 향진시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	77
〈표 5-7〉 직할시 원주민구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	77
〈표 5-8〉 촌장 및 이장 단체장 의석 수(2018년) .....	78
〈표 5-9〉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 .....	79
〈표 5-10〉 영국 지역별 지방의회 수 .....	80
〈표 5-11〉 직할시 원주민구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	82
〈표 5-12〉 선거 주기에 따른 선거구당 대표 숫자 .....	87

<표 5-13> 일본, 대만, 영국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비교 .....	88
<표 6-1> 「공직선거법」 .....	90
<표 6-2>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92
<표 6-3> 타 시도의회 규모 .....	93
<표 6-4> 타 시도의회 인구 규모 등에 따른 의원 정수 .....	94
<표 7-1> 오산시의회사무기구 인력배분 대안 .....	99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방법 .....	6
[그림 3-1]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현황 .....	22
[그림 3-2] 법 개정 절차 .....	30
[그림 3-3]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	30
[그림 4-1] 동두천시의회 조직구조 .....	43
[그림 4-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조직구조 .....	46
[그림 4-3] 용진군의회 조직구조 .....	49
[그림 4-4] 여수시의회 조직구조 .....	52
[그림 4-5] 경주시의회 조직구조 .....	55
[그림 4-6] 강릉시의회 조직구조 .....	58
[그림 4-7] 광주시의회 조직구조 .....	61
[그림 4-8] 하남시의회 조직구조 .....	64
[그림 4-9] 의왕시의회 조직구조 .....	67
[그림 4-10] 군포시의회 조직구조 .....	70
[그림 5-1]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회 구조 .....	83
[그림 7-1] 조직개편(안) .....	98
[그림 7-2] 조직개편안: 조직도 .....	101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1) 오산시 환경 변화

##### ■ 인구 등 규모 확대

- 행정안전부(2024)에 따르면 오산시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23만 1,937명으로 2015년 20만 6,800명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15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오산시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규모는 7,624억원으로 2015년 5,004억에 비해 52.4% 증가하였음
- 오산시의 발전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고 오산시의 예산 등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2015년 대비 인구와 예산규모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제1대 오산시의회가 7명으로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의원 정수에 변화가 없었음

#### 2)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 2020년 12월 32년만의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확대 기반을 조성함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요구의 증대 및 새로운 지방자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의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추진함

##### ■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기능 배분의 변화

- 이와 같은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오산시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배분, 인력 배분, 조직체계의 정비 등이 요구됨
  - 부서(팀)별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쇠퇴분야와 핵심기능분야, 신규기능분야를 구분하여 합리적인 인력재배치와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가 요구됨



- 유사·중복사무, 다수부서의 연계사무에 대한 부서별 기능조정을 통한 제한된 자원(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설계가 요구됨

### 3) 지방의원 정수의 적정성

#### ■ 지방의원의 대표성

- 지방의원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의 대표성이 적정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있음
- 국회의원선거 인구 편차가 2:1인 것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인구 편차를 3:1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 선거구 획정

- 영국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거버넌스 구조,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지방의원의 대표성과 역할, 의회의 미래 추세 및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명성준 2019)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 주민, 전문가 및 지방의원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매우 미약함

## 2. 연구의 목적

### 1)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 ■ 지방의원 정수의 합리적 결정

- 기존 연구,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변화를 통해 여기에 대한 답에 접근하려 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정수가 합리적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 도출

- 오산시 기본현황과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제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2)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 부서별 기능분석을 통한 기능재배분 및 신규기능의 발굴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으로 적합한 기능과 적합하지 않은 기능의 구분

- 오산시의회의 사무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적합한 기능인가에 관한 분석
- 현재 수행 기능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에 관한 조직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및 전문가 분석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의 현재 수행 기능 중 기능의 성격이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
  - 기능의 성격이 유사한 기능의 분류
  - 기능수행의 영향 범위가 유사한 기능의 분류
  - 기능수행을 위해 일관화된 업무 프로세스상에 속한 기능의 분류

### ■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조직 개편안 제시

-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무기구 확대 방안 제시
- 부서별 기능분석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재설계를 통해 오산시의회 사무기구의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대안 제시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 기준시점: 2024년

- 본 연구는 2024년 현재의 법·제도 및 조직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함
- 모든 현황자료 및 통계자료는 기준시점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함

##### ■ 연구시점: 1949년~2024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의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변천 및 의원 정수 변화 등을 연구함

#### 2) 공간적 범위

##### ■ 지방의원 선거구

- 본 과업의 범위는 지방의원 선거구 전체임



- 오산시의원 적정 정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의 선거구 획정 방식과 의원 정수를 분석대상에 포함함

### ■ 오산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조직 전체

- 본 과업의 범위는 오산시의회임

### ■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 본 과업의 수행에서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합의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함

## 3) 내용적 범위

### ■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사무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내·외부 행정환경 분석

-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 지원에 초점을 둔 행정기능 재배분
  - 적극적인 신규기능의 도출 및 유사기능의 연계수행체계 구축을 통한 기능수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제시

### ■ 조직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 조직 개편(안), 즉 조례 개정(안) 제시

- 기능 중심의 조직구조 재설계 및 인력재배치 대안 제시
  - 부서별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직 구조 재설계안 제시
  - 부서별 인사운영방안 설계

## 2. 연구의 방법

### ■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 도출을 위한 기본 현황 조사 및 연구

- 적정 의원 정수 도출을 위한 오산시 인구·경제 등 기본 현황과 오산시의회 및 오산시 공무원 수, 조직규모, 예산액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오산시 기본현황과 오산시의회 및 오산시 공무원 수, 조직규모, 예산액 등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KOSIS 국가통계포털, 오산시의회 및 오산시 누리집과 오산시의회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고, 최근 3년간의 오산시 예산 자료를 재정365, 오산시의회 및 오산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함

### ■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제도 분석

-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의회 누리집,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고자 함

### ■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지방의회 사례 조사 및 분석

- 오산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KOSIS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의원정수, 지방의회 조직 및 예산액, 상임위원회 수 등을 조사하여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와 비교 분석하고자 함

### ■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외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누리집, 선행연구, 해외 지방의회 누리집, 해외 법령정보 등을 조사하여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를 제시하고자 함

### ■ 상임위원회 신설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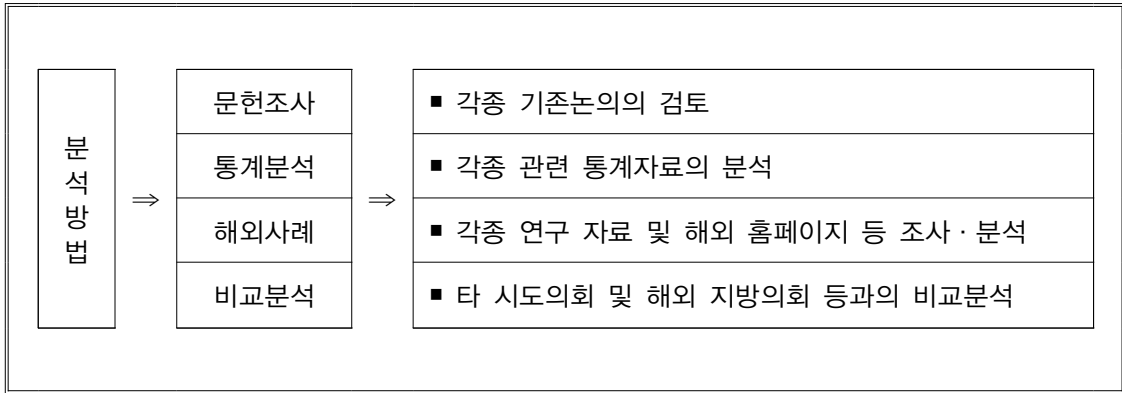
-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 명칭, 상임위별 소관 부서, 인력 구조, 업무 등에 대한 선행연구 및 타 시도의회 사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의회 및 오산시 현황 등에 대해 조사·분석해야 함
- 이러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타 시도의회 사례, 해외 사례, 오산시의회 및 오산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 의원 정수를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 등을 제시하고자 함

###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의회운영 발전방안 제시

- 오산시의회 효율적 상임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회사무과 조직의 구성·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위의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과 조직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지방의회 사례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산시의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수행방법



## 제2장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1.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당선인 결정방식, 선거구제, 투표구조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고 있음<sup>1)</sup>
- 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의석수/선거구 크기, 의석의 할당, 선거구획정 원리 및 규칙, 선거구획정관리제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준으로 선거구의 인구 동등성, 형상의 조밀성, 경계선의 연속성, 행정구역 존중, 사회적 동질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사용<sup>2)</sup>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준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임
- 인구대표성은 선거구당 인구수 동등원칙을 추구하는데, 이는 표의 등가성 확보 즉, ‘1인 1표, 1가치’의 원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원리에 입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면 행정구역의 분할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지역대표성 원리에 따르면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분할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지역대표성 역시 여러 나라의 선거구 획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sup>3)</sup>
- 선거구획정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함. 첫 번째는 입법부 모델로 선거구획정의 기본원리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 모델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의 소지가 존재하며, 공정한 획정과 정치적 평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sup>4)</sup>
- 두 번째 모델은 위원회 모델로서 당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중립적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으로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면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배제되고 위원회는 원칙에 근거해서 각 지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획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어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sup>5)</sup>

1) International IDEA, Electoral System Design: The New International IDEA Handbook, Stockholm, Swede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08, p.5. 다만, 선거제도를 광의로 이해하면 선거의 행정적 측면을 담당하는 다양한 제도 역시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기표소의 설치 방식, 유권자의 등록, 선거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2) 강휘원, 20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p.125.

3) 윤종빈, 2006. 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경기도 사례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2호, p.307; 강휘원, 앞의 논문, p.125.

4) 강민제·윤성이, 2007.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2호.

5) 문은영, 2020. 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입법과정, 제12권 제1호, p.47.



-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다양한 기준들 중 무엇에 더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라는 정치적 판단이 결부될 수 밖에 없으며, 위원회 모델은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런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형된 위원회 모델로 미국 아이오와에서 시도된 바 있는 ‘입법부 소속의 초당파적 선거구획정기관’이 있는데, 이 모델은 초당파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획정안에 대한 승인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함. 또한, 한국의 현행 자치구·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같이 입법부 모델과 위원회 모델을 절충한 변형된 위원회 모델도 존재함<sup>6)</sup>

## 2. 지방의회 의원정수 결정

-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선거구당 의석수에 총 선거구수를 곱한 인원내 해당됨으로 한 지역의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즉,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총 몇 개의 선거구를, 선거구당 몇 명의 의원으로 뽑을지 선택하면 의원정수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반대의 순서로 결정됨. 즉, 사전에 지역별 지방의회 의원 총 정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는 방식임.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는 선거제도의 모든 요소가 완비되어도 전체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정수의 결정은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됨.<sup>7)</sup>
- 강원택(2002)은 타게페라와 슈가트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를 약 362석으로 산출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가 비교정치적 지표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함
- 김태일·임채홍(2008)은 타게페라와 슈가트의 공식을 재해석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 추정의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현재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는 중간보다 다소 작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수준으로 평가함
- 김도중·김형준(2003)은 의원정수 산출기준에 총인구, GDP 규모, 중앙정부예산, 중앙공무원 수를 포함하여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68명에서 379명으로 산출
- 지방의원 정수 산출을 위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고 있으나, 신원득(2009)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 조정제도에 자율성 부여가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의원정수가 자율화된 경우를 상정해서 지방의원 총정원 산정에 대한 객관적 산정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음

6) 최선·김현, 2023.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1집 4호, p203

7) 최선·김현, 2023.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1집 4호, p203

- 한국정치학회(2021)는 타가페라와 슈가트의 공식을 기초의회에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현재 지방의원 정수가 현저히 적다고 주장했고, 이 연구에선 현재 기초의회 최소정수인 7명의 적절성 역시 지방의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재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현행 7명의 최소정수보다 4명이 더 많은 11명이 최소 필요하다고 제안
- 지방의회 의원정수 결정을 위해선 의원정수 산정을 위한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정해두려고 하는 대신, 의원정수 산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주적 절차가 반영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sup>8)</sup>

## 제2절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제도의 변천

### 1. 선거구 획정제도의 역사적 변천<sup>9)</sup>

#### 1) 1949년-1960년

-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방법을 법률로 명문화 하였음. 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과 시·읍·면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읍·면장 등 기초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방법을 구체화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176-177). 제정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의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제11조)
  -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0만 미만인 때에는 25인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일 때에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 이상일 때에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제12조)
  -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미만일 때에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이상 20만미만일 때에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만이상일 때에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3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의원은 인구 3만미만인 때에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이상일 때에는 3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3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의원은 인구 5천미만인 때에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이상 1만미만일 때에는 5천을 초과하는 인구 매 1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2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제13조)

8) 최선·김현, 2023.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1집 4호, p205

9)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참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 인구의 기준은 공식으로 전국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의한다.(제14조)
  -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제15조)
  -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제16조)
  -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의원임기 만료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기산한다.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제17조)
  -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유급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각급의회의원은 타급의회의원선거의 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의원의 직을 사한 후라야 한다.(제18조)
- 제정 지방자치법의 정수산정 기준은 이후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데, 제정 직후인 1949년 12월 15일과 1956년 2월 13일, 그리고 1960년 11월 1일 세 차례의 변화를 겪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제정 지방자치법 (1949. 7. 4)	1차 개정 (1949.12.15)	3차 개정 (1956. 2.13)	6차 개정 (1960. 11. 1)
도/서울특별시의회	인구 백만 명 미만: 25명 매 5만당 1인(2백만까지), 그 이후 매 8만당 1인	인구 50만 명 미만: 20인 50~100만 명: 25인 매 5만당 1인(2백만까지), 그 이후 매 8만당 1인	도의회: 민의원 수의 배수 제주도: 15인 서울: 인구 백만까지 35인 매 5만당 1인 각 구 의원 수 균등배분(남은 수는 인구다수인 구에 배정)	도의회: 민의원 선거구마다 2인 서울: 민의원 선거구마다 3인 제주: 6인(인구 5만 미만 민의원 선거구의 경우 1인)
시의회	10만 명 미만: 20인 매 2만당 1인(20만까지) 매 3만당 1인(30만까지)	좌동	10만 명 미만: 15인 매 2만 5천당 1인(20만까지) 매 5만당 1인(30만까지) 이후 매 10만당 1인	좌동
읍의회	3만 명 미만: 15인 매 3천당 1인	3만 명 미만: 14인 매 4천당 1인	3만 명 미만: 13인 매 1만당 1인	
면의회	5천 명 미만: 10인 매 1천당 1인 (만 명까지) 그 이후 매 2천당 1인	5천 명 미만: 10인 매 2천5백당 1인 (만 명까지) 그 이후 매 5천당 1인	1만 명 미만: 11인 매 1만당 1인	

출처: 한국정치학회(2021) p10

- 제정 지방자치법과 그 이후 개정내용에 나타난 지방의원 정수 산정기준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가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점임. 1960년 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인구에 따라 기본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인구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원을 증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sup>10)</sup>

- 두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지역에 따라 기준 인원과 증가폭을 차별적으로 설정한 점을 들 수 있음. 규모가 큰 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기본인구의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고 추가로 할당하는 인구수 역시 5% 정도 상정한 반면, 시의회와 읍·면의회의 경우 최소한의 의원 정수에 대한 인구수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추가 할당을 위한 인구 증가의 폭 역시 이에 비례하여 정해져 있음. 이는 초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결정에 있어서 인원과 함께 지역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들어가 있음을 의미함.<sup>11)</sup>
- <표 2-1>에 제시되어 있듯이 세 차례의 지방의회 선거 중 제정 지방자치법의 의원정수 산정 기준에 의거해 치러진 선거는 없으며, 첫 지방선거는 1949년 12월 15일 1차 개정 지방자치법의 기준으로, 두 번째 선거는 1956년 개정 지방자치법, 세 번째 선거는 196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각기 다른 의원 정수 산정기준에 따라 치러짐.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 치러진 세 차례의 지방의회선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음

<표 2-2> 제1-2공화국 지방의회 선거 실시 상황

차수	의회 구분	선거일	지방자치단체 수	선거실시 단체 수	의원정수	인구수	인구수대비
1차	도의회	1952. 4.25	9	7	306	20,188,641	65,976 : 1
	시·읍·면의회	1952. 5.10	1,542	1,397	17,559		1,150 : 1
2차	서울특별시·도의회	1956. 8.13	10	10	437	21,502,386	49,205 : 1
	시·읍·면의회	1956. 8. 8	1,491	1,458	16,961		1,268 : 1
3차	서울특별시·도의회	1960.12.12	10	10	487	24,989,241	51,313 : 1
	시·읍·면의회	1960.12.19	1,518	1,468	16,909		1,478 : 1

출처: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 p179(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리

## 2)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2022)

- 제2기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제도적인 변화는 없으나, 제1기 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1995.4.1.)을 통하여 시·도원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됨
-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고, 산정된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정함
- 1988년에는 고비용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동법 개정(1988.4.30.)을 통하여 지방의원 정수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조정이 이루어짐

10)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0p

11)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1p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첫 지방의회 선거에서 광역의원은 866명으로 인구 약 5만명 당 1명으로 의원정수가 결정되었고, 기초의원은 4,304명으로 인구 약 1만명 당 1명으로 의원정수가 결정됨
- 200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정수는 682명으로 인구 약 7만명 당 1인으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치러진 선거 중에서 인구 대비 광역의원 정수가 가장 적게 산정되었음
- 기초의원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치러진 선거 중 2018년 지방선거가 의원정수는 2,927명으로 3번째로 적은 의원정수로 결정되었으나, 인구 대비로 보면 17,792명 당 1명으로 가장 적은 기초의원 정수가 결정되었음
-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를 살펴보면 광역의원은 2002년 이후 인구수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기초의원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감소하였음

<표 2-3>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 정수의 변화

연도	선거일	광역의원	인구수 대비	기초의원	인구수 대비
1991	3.26(기초) 6.20(광역)	866	50,129 : 1	4,304	10,087 : 1
1995	6.27	972(875+97)	45,894 : 1	4,541	9,824 : 1
1998	6. 4	690(616+74)	67,854 : 1	3,490	13,416 : 1
2002	6.13	682(609+73)	70,587 : 1	3,485	13,814 : 1
2006	5.31	733(655+78)	66,724 : 1	2,888 (2,513+375)	16,936 : 1
2010	6. 2	761(680+81)	65,630 : 1	2,888 (2,512+376)	17,294 : 1
2014	6. 4	789(705+84)	65,076 : 1	2,898 (2,519+379)	17,718 : 1
2018	6.13	824(737+87)	63,201 : 1	2,927 (2,541+386)	17,792 : 1
2022	6. 1	872(779+93)	59,404 : 1	2,988 (2,602+386)	17,336 : 1

출처: 강신구(2017, 2018) 역대선거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주: 괄호 안의 수는(지역구+비례의원)

- 지방의원 정수와 관련된 법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다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한 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광역의원의 경우 전부 지방자치법부터 자치구·시·군마다 2인이었던 것이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 규정한 것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고, 기초의원의 경우 전부 지방자치법에서 동마다 1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2005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3과 같이한다 등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후 현재까지의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표 2-4> 1988년 이후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방자치법 제27조, 28조 (1988. 4. 6)	- 시·군·자치구마다 2인 - 30만 이상 매 20만까지 1인 추가 - 최소 25인~최대 70인	- 동마다 1인(인구 2만 초과 시 2인) - 최소 15인~최대 25인 - 읍·면마다 1인(2만 초과 시 2인, 2만 마다 1인 추가) - 최소 10인~최대 20인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3,14조 (1990.12.31.)	- 자치구·시·군마다 3인(각 단위 복수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선거구가 기준) - 30만 초과 매 20만 마다 1인 추가 - 7만 미만인 경우 2인 - 직할시 최소 23인, 도 최소 17인	- 읍·면·동마다 1인(2만 초과시 매2만 마다 1인 추가) - 최소 7인, 최대 45인 - 인구 70만 초과 구·시·군의 정수는 50인
공직선거법 제22, 23조 (1998. 4.30)	- 자치구·시·군마다 2인(각 단위 복수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선거구가 기준)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통합 전의 시와 군마다 2인(최초 선거만) - 지역구 최소 14인 -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0분의 10(최소 3인)	- 읍·면·동마다 1인(5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 - 최소 정수 7인
공직선거법 제22, 23조 (2005. 8. 4)	- 자치구·시·군마다 2인(각 단위 복수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선거구가 기준) - 지역구 최소 16인 -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최소 3인)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3과 같이함 - 최소 7인 -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최소 1인)
공직선거법 제22조, 23조 (2010. 1.25)	-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각 단위 복수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선거구가 기준)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 100분의 10 범위 조정 가능 - 자치구·시·군 지역구의원 최소 1인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통합 전의 수 고려(최초 선거만) - 최소 19인	상동
공직선거법 제22조, 23조 (2014. 2.13)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 100분의 14 범위 조정 가능	상동
공직선거법 제22조, 23조 (2022. 4.20)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 100분의 20 범위 조정 가능	상동

출처: 한국정치학회(2021) p15-16 재정리

- 지방의회 부활 이후 광역의회의원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 비율은 4만 5천여 명에서 7만여 명까지 변화를 겪다가 최근 선거에서는 5만 9천여명당 1의 비율임. 지역별 편차를 보면 대체로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과 부산, 대구 등이 높은 인구수 대비 광역의원 비율을 보이지만, 지역의 범위에 비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 전남,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수 대비 광역의원의 비율을 보임
-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수가 광역의원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최소 배정 인원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수 산정과 같이 지역의 대표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있었음을 보여줌

<표 2-5>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의 변화

지역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2022
서울	132 (77,510)	147 (72,195)	104 (99,323)	102 (100,819)	106 (96,076)	106 (96,769)	106 (96,379)	110 (89,978)	112 (85,310)
부산	51 (74,791)	61 (62,265)	49 (78,520)	44 (85,626)	47 (77,728)	47 (75,650)	47 (75,269)	47 (74,042)	47 (71,348)
대구	28 (87,480)	41 (54,367)	29 (86,540)	27 (93,680)	29 (86,735)	29 (85,916)	30 (83,471)	30 (82,550)	32 (74,591)
인천	27 (85,489)	36 (50,498)	29 (84,723)	29 (88,732)	33 (78,770)	33 (82,385)	35 (82,651)	37 (80,697)	40 (74,263)
광주	23 (54,680)	26 (43,808)	17 (78,238)	19 (73,121)	19 (74,538)	22 (65,535)	22 (67,312)	23 (63,762)	23 (62,720)
대전	23 (55,310)	26 (40,369)	17 (77,840)	19 (74,199)	19 (77,108)	22 (67,530)	22 (52,764)	22 (53,261)	22 (66,061)
울산			17 (59,531)	19 (55,965)	19 (57,258)	22 (50,717)	22 (52,764)	22 (53,261)	22 (51,066)
세종							15 (8,549)	18 (16,351)	20 (18,919)
경기	117 (65,383)	136 (45,262)	97 (88,076)	104 (92,916)	119 (90,120)	124 (92,981)	128 (95,962)	142 (91,507)	156 (87,333)
강원	54 (27,153)	58 (27,249)	47 (32,775)	43 (35,951)	40 (37,893)	42 (36,052)	44 (35,109)	46 (33,761)	49 (31,482)
충북	38 (36,757)	40 (34,743)	27 (54,677)	27 (55,469)	31 (48,115)	31 (49,300)	31 (50,793)	32 (50,081)	35 (45,702)
충남	55 (32,125)	61 (33,016)	36 (52,795)	36 (53,222)	38 (51,663)	40 (50,975)	40 (51,315)	42 (50,834)	48 (44,244)
전북	52 (36,578)	58 (35,689)	38 (52,750)	36 (54,949)	38 (49,732)	38 (48,950)	38 (49,375)	39 (47,881)	40 (44,716)
전남	73 (28,313)	75 (33,433)	55 (39,339)	51 (40,976)	51 (38,643)	57 (33,595)	58 (33,003)	58 (32,720)	61 (30,072)
경북	87 (30,763)	93 (30,760)	60 (46,499)	57 (48,649)	55 (49,066)	58 (46,050)	60 (45,026)	60 (44,935)	61 (43,093)
경남	89 (43,210)	94 (39,069)	51 (59,802)	50 (62,240)	53 (59,847)	54 (60,315)	55 (60,748)	58 (58,581)	64 (51,837)
제주	17 (29,732)	20 (25,731)	17 (31,140)	19 (28,864)	36 (15,597)	36 (15,664)	36 (16,547)	38 (17,314)	40 (16,959)
합계	866 (51,512)	972 (44,662)	690 (67,854)	682 (70,587)	733 (66,724)	761 (65,630)	789 (65,076)	824 (63,201)	872 (59,404)

출처: 한국정치학회(2021) p17-18 재정리

주: 괄호안은 인구수 대비

- 광역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별 기초의원의 정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지방의회 부활 초기에 인구 약 1만당 1명의 기초의원이 산정되었지만, 이후 대비 인구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최근에는 인구 약 1만 7천당 1명의 기초의원 비율을 보임
-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였을 때, 서울과 부산, 경기와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의원 대 인구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과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선거에 걸쳐 인구수 대비 기초의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이와 같은 사실은 기초의회의원의 정수 산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함께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2-6〉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역별 기초의원 정수의 변화

지역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2022
서울	806 (13,167)	520 (19,865)	513 (20,046)	419 (24,306)	419 (24,481)	419 (24,383)	423 (23,398)	427 (22,376)
부산	320 (11,870)	225 (17,100)	215 (17,524)	182 (20,073)	182 (19,536)	182 (19,438)	182 (19,121)	182 (18,425)
대구	203 (10,981)	146 (17,190)	140 (18,067)	116 (21,684)	116 (21,479)	116 (21,588)	116 (21,350)	121 (19,727)
인천	206 (8,825)	135 (18,200)	131 (19,643)	112 (23,209)	112 (24,275)	116 (24,938)	118 (25,304)	123 (24,151)
광주	125 (9,113)	81 (16,421)	84 (16,540)	68 (20,827)	68 (21,203)	68 (21,778)	68 (21,567)	69 (20,907)
대전	107 (9,810)	75 (17,644)	75 (18,023)	63 (23,255)	63 (23,582)	63 (24,452)	63 (23,861)	63 (23,069)
울산		59 (17,153)	59 (18,023)	50 (21,758)	50 (22,316)	50 (23,216)	50 (23,435)	50 (22,469)
경기	599 (10,277)	466 (18,334)	500 (19,327)	417 (25,718)	417 (27,649)	431 (28,500)	447 (29,070)	463 (29,425)
강원	245 (6,451)	195 (7,900)	190 (8,137)	169 (8,969)	169 (8,960)	169 (9,141)	169 (9,190)	174 (8,866)
충북	180 (7,721)	146 (10,112)	150 (9,985)	131 (11,386)	131 (11,667)	131 (12,020)	132 (12,141)	136 (11,762)
충남	223 (9,032)	206 (9,227)	209 (9,168)	178 (11,030)	178 (11,455)	169 (12,146)	171 (12,141)	177 (11,998)
전북	283 (7,315)	249 (8,051)	237 (8,347)	197 (9,593)	197 (9,443)	197 (9,525)	197 (9,478)	198 (9,033)
전남	343 (7,311)	295 (7,335)	291 (7,182)	243 (8,111)	243 (7,881)	243 (7,878)	243 (7,810)	247 (7,427)
경북	399 (7,170)	342 (8,193)	339 (8,180)	284 (9,503)	284 (9,405)	284 (9,513)	284 (9,494)	288 (9,127)
경남	451 (8,143)	309 (9,871)	314 (9,911)	259 (12,247)	259 (12,576)	260 (12,851)	260 (12,870)	270 (12,287)
제주	51 (10,091)	41 (12,912)	38 (14,432)					
합계	4,541 (9,560)	3,490 (13,416)	3,485 (13,814)	2,888 (16,936)	2,888 (17,294)	2,898 (17,718)	2,927 (17,792)	2,988 (17,336)

-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결정은 해당 지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 인구수 비율의 편차가 반드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보다는 오히려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그러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2. 지방의회의원 정수 선정기준 논의<sup>12)</sup>

-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구수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을 달기 어렵지만, 거주환경, 교통, 지세의 차이로 인해 지역마다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표성의 침해를 겪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혼합을 통해 다수가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는 작업은 대의민주주의 정당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함
-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제헌의회 의원들은 인구대표성에 따른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마다 정수 산정의 주체 역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려 하였음
- 2005년 개정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였음. 인구 비율과 동수 비율의 고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광역의원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원인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성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2018년 정개특위 회의록에서 찾아본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관한 논의는 이전 공직선거법에서 각 급별 인구 기준을 명시하던 것에서 <별표 3>에 따르는 방식으로 변화함
- 2018년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까닭에 정치적 그리고 당파적 고려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며, 기초의회의 정수배분은 지역별로 산정된 총정수 내에서 결정되는데 이것이 지역 내 도농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현재 기초의회의 정수배분은 기초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인구 비율과 읍·면 비율을 고려’ 하고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게끔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권한 역시 매우 제한적임

12)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p-29p 내용 재정리

<표 2-7>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중선거구제 (2인~4인 선출)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으로 정함 (제26조제1항)	시·도 조례로 정함 (제26조제2항)
선거구획정 위원회	없음	있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11인)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마련,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 제출→시·도지사가 시·도의회에 제출→조례로 의결하여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으로 정함 (제22조)  - 시·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함.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수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함 - 시·도의회 최소정수는 19인 - 비례대표: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공직선거법」으로 정함(제23조)  -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 비례대표: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출처: 한국정치학회(2021) p28



## 제3장 오산시 현황 및 선거구 획정 법·제도 분석

### 제1절 오산시 현황

#### 1. 기본현황<sup>13)</sup>

##### ■ 지역특성

- 오산생태하천과 독산성 문화유산을 가진 고품질 주거환경
- 철도·고속도로·국도가 관통하는 산업·교통의 요충지
-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성장관리권역
-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복합도시로 발전 기대

##### ■ 면적

- 오산시 전체 면적은 42.70km<sup>2</sup>로 농경지가 7.53km<sup>2</sup>(17.63%), 임야가 9.21km<sup>2</sup>(21.57%), 기타 25.96km<sup>2</sup>(60.80%)임

##### ■ 인구<sup>14)</sup>

- 오산시 세대는 106,435세대이며, 인구는 232,965명임(남자 121,500명, 여자 111,465명)  
- 평균 연령은 40.18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7,651명임(남자 12,230명, 여 15,421명)

<표 3-1> 오산시 인구 연령별 현황

구분	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7.83%)	(11.03%)	(12.44%)	(15.40%)	(19.24%)	(15.96%)	(18.10%)
남	121,500	9,298	13,219	15,858	19,872	24,113	19,521	19,619
여	111,465	8,952	12,467	13,121	16,006	20,709	17,668	22,542
계	232,965	18,250	25,686	28,979	35,878	44,822	37,189	42,161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

##### ■ 행정구역<sup>15)</sup>

- 오산시 행정구역은 8동 371통 2,547반임

13) 오산시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osan.go.kr>)

14) 2024년 3월 31일 기준임

15) 2024년 3월 31일 기준임

&lt;표 3-2&gt; 오산시 동 현황

구분	면적 (㎢)	행정구역			세대수	인구			공무원 (현원)
		법정동수	통	반		계	남	여	
중앙동	3.6	3	58	374	14,027	34,109	17,113	16,996	18
대원1동	2.5	4	69	452	20,750	44,585	23,231	21,354	18
대원2동	3.7	5	33	236	9,493	22,644	11,833	10,811	16
남촌동	6.1	6	50	308	15,082	23,302	13,834	9,468	17
신장1동	3.4	4	44	412	15,429	35,560	17,896	17,664	17.875
신장2동	3.6	4	37	231	9,901	23,192	11,949	11,243	16
세미동	13.3	5	38	264	13,113	31,413	16,190	15,223	17
초평동	6.5	6	42	270	8,640	18,160	9,454	8,706	14
계	42.7	24	371	2,547	106,435	232,965	121,500	111,465	133.875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

## 2. 오산시 현황

### ■ 행정기구 및 공무원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산시 행정기구는 5국, 3관, 24과, 1의회, 1직속기관, 3사업소, 8동 159팀임
  - 시 산하 조직으로 오산시설물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이 있음
  - 5국: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 3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오산시 공무원은 2024년 기준 정원 850명에 현원 833.625명임
  - 본청은 정원 471명에 현원 467.75명임
  - 의회는 정원 21명에 현원 16명임
  - 직속기관은 정원 65명에 현원 66명임
  - 사업소는 정원 154명에 현원 150명임
  - 동은 정원 139명에 현원 133.875명임

### ■ 재정규모

- 2024년 본예산 기준 오산시 예산액은 762,408,360천원임
  - 일반회계는 641,361,3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1,046,970천원임
  - 특별회계는 7종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종 108,032,84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5종 13,014,123천원임
- 국·공유재산은 총 8,426필지 7,665,028.49㎡, 192동 283,957.77㎡임



<표 3-3> 오산시 국유행정재산 현황

구분	계	도로	하천·구거·제방·농경지	기타
필지	2,104	1,516	524	64
면적(㎡)	1,261,159.86	595,701.80	652,310.56	13,147.50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

<표 3-4> 오산시 공유재산 현황

구분	토지			건물		
	계	행정	일반	계	행정	일반
필지	6,511	6,427	84	199	199	-
면적(㎡)	7,076,709.43	7,026,998.39	49,711.04	298,022.03	298,022.03	-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

### 3. 오산시의회 현황

#### 1) 오산시 의정 환경

- 오산시의 의정 환경은 인구 수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시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증가로 시의회 소관 사무는 증가하였으나, 의원 정수에는 1991년 초대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7명으로 변화가 없으므로 요약 가능함
- 오산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였고, 동쪽으로는 화성시 동탄면, 서쪽으로 화성시 정남면, 남쪽으로 평택시 진위면, 북쪽으로 화성시 태안읍과 접경하고 있음
  - 오산시는 도·공·농 복합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지형은 북동과 서남으로 폭이 짧고 서북과 남동으로 폭이 길으며,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15km 떨어져 있으며, 철도·전철·고속도로·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를 이루고 있음
- 오산시 전체 인구는 1995년 67,549명에서 2024년 3월 기준 232,965명으로 거의 4배의 인구가 증가하였음
  - 오산시 연령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19.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30대~5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높은 도시임
  - 오산시 선거인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193,105명(남 101,029명, 여 92,076명)으로 전체 인구의 83.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수 대비 높은 선거인수 비율은 선거권을 지닌 18세 이상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
- 오산시는 1989년 오산읍에서 승격하여 6개 동으로 출범하여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6개동 체제를 35년간 유지하다 2024년 1월 대원동을 대원1동, 대원2동으로 신장동을 신장1동, 신장2동으로 각각 분동하여 현재는 8개동 체제임

- 오산시의회 의원정수는 제9대 기준 7명이며, 이 중 6명이 지역구의원, 1명이 비례대표임
  - 오산시의 인구는 1995년에 비해 현재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는 1995년 740억원에서 2024년 7,62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1991년 초대 이후 현재까지 7명에서 변화가 없음
-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 선거구는 오산시·화성군이었으나,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오산시 지역 단독 선거구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오산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 변화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1992년 0.5명에서 현재 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경기도의원 2명, 오산시의원 7명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의원 정수에 변화가 없음

## 2) 오산시의회 조직 구조

- 오산시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이 있으며, 의원 정수는 7명임
- 오산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시도의회와 달리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의회사무처는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정팀은 공무원 인사관리, 서무·예산·회계, 행사·포상·위원회 관리, 의장단 부속실 운영, 의장의전 수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홍보팀은 보도자료, 언론·홍보,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 의정활동 영상, 사진,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의사팀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 회의록 작성 및 전산화, 전자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은 의안검토,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의원 연구단체 운영, 입법·법률 고문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그림 3-1]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현황



### 3) 오산시의회 인력 현황

-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 직원은 총 23명이며, 5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과 시간제 라급 및 공무원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 직급별 구성을 보면 5급 2명, 6급 5명, 7급 7명, 8급 5명, 9급 2명, 시간제 라급 1명, 공무원직 1명으로 되어 있음
  - 오산시의회 직원 구성의 특징으로 정책지원관을 타 시도의회와 달리 임기제가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1대 오산시의회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직원 정수는 12명이었음
- 7명의 오산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수를 비교하면 시의원 1인당 의회사무과 직원은 3.29명이며, 입법지원인력은 정책지원관이 일반행정직으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입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입법지원인력으로 간주한다면 0.43명으로 타 시도의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제2절 선거구 획정 법·제도

### 1. 선거구 획정 관련 법령

####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의 획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도회의 의원정수(제22조)
  - 시·도별 지역구시·도위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회의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하도록 함
  -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른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비례대표시·도 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함

**제22조(시·도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위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2016. 3. 3., 2022. 4.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회의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8. 4. 30., 2005. 8. 4., 2010. 1. 25., 2021. 1.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 4. 1.>

[제목개정 2014. 2. 13.][2010. 1. 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7. 3.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23조)

-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 3과 같이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자치구·시·군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규정함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규정함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 8. 4.]

- 「공직선거법」 별표 3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의원 총 정수는 2,978명임. 총 정수 2,978명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총 정수임

<표 3-5>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의원 총정수표(2,978명)

시 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24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20
인천광역시	12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60
강원도	17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176
전북특별자치도	198
전라남도	247
경상북도	288
경상남도	270

출처: 공직선거법 별표3

○ 자치구·시·군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제24조의3)

- 자치구·시·군의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의원선거

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4.> [본조신설 2015. 6. 19.]

#### ○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6조)

-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하도록 규정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규정함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重合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4. 1., 2010. 1. 25.>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 4. 1., 2005. 8. 4., 2010. 1. 25., 2021. 1. 12.>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22. 4. 20.>

[2022. 4. 20. 법률 제18841호에 의하여 2019. 2.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6조 제1항 [별표 2]를 개정함.]

## ■ 공직선거관리규칙

###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제4조)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음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공직선거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13., 2019. 1. 25.>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8. 4.][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05. 8. 4.>]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의2)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함
-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됨
- 그 밖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중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5. 12. 24.>]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제4조의3)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  
시함

**제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4조의3)

-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함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표 3-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단위 : 명)

구 분	의 원 정 수		
	계	지 역 구	비 례
소계	463	406	57
수원시	37	33	4
용인시	32	28	4
고양시	34	30	4
성남시	34	30	4
화성시	25	22	3
부천시	27	24	3
남양주	21	19	2
안산시	20	18	2
평택시	18	16	2
안양시	20	18	2
시흥시	16	14	2
김포시	14	12	2
파주시	15	13	2
의정부시	13	11	2
광주시	11	9	2
광명시	11	9	2
하남시	10	9	1
군포시	9	8	1
오산시	7	6	1
양주시	8	7	1
이천시	9	8	1
구리시	8	7	1
안성시	8	7	1
의왕시	7	6	1
포천시	7	6	1
양평군	7	6	1
여주시	7	6	1
동두천시	7	6	1
과천시	7	6	1
가평군	7	6	1
연천군	7	6	1

##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제4조의3)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함

**제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24.]

〈표 3-7〉 오산시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시·군명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오산시	소 계	6	
	가선거구	3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나선거구	3	남촌동, 초평동, 대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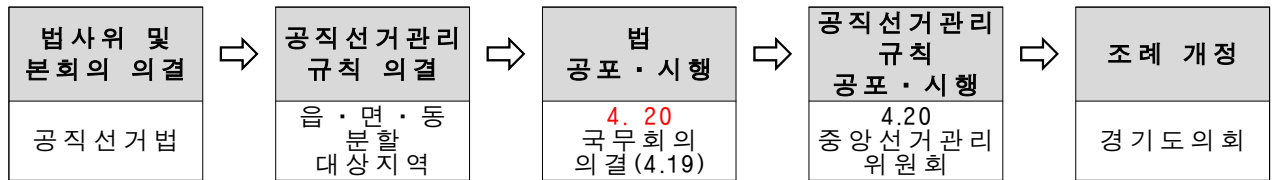


## 2. 선거구 획정 절차<sup>16)</sup>

### 1) 법 개정 절차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함
- 읍·면·동 분할 대상지역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의결함
-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 공포·시행 함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시행
-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
- 제8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당시 「공직선거법」 시행 후 2일까지 확정안을 제출하고, 9일내에 경기도 시군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를 의결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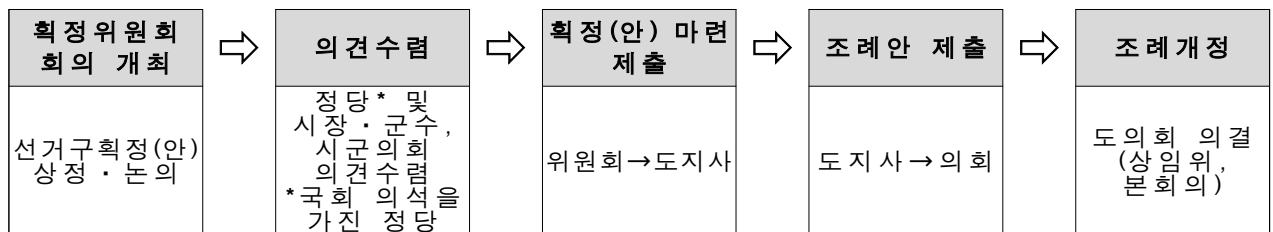
<그림 3-2> 법 개정 절차



### 2) 경기도 선거구획정 및 조례 개정 절차

-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구획정(안) 상정 및 논의
-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당(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 수렴
-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 도의회는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 개정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별표(시군별 정수, 지역구) 개정

<그림 3-3> 경기도 선거구 획정 및 조례 개정 절차



16) 경기도의 제8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절차를 검토함

### 3. 현행 제도의 문제점<sup>17)</sup>

#### 1)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결정의 문제점

-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결정의 문제는 해당 지역이 그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결정의 모든 과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정해지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별표2]로 첨부됨
- 위와 같은 내용은 지역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에 맞지 않는 의원정수 결정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함
- 실제로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가 읍면동 분할이나 생활권 등과 맞지 않게 설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반발이 발생하기도 함

#### 2)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결정의 문제점

#####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

-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의 측면에서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설치되어 광역의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치단체의 공무원(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실무를 맡고 있음
- 위와 같이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을 통해 광역의회에 발의되고, 광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임

##### ■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 결정

-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 결정에 있어 기초 단위에서의 자율성이 부재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위별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를 확정하면 비로소 광역단위에서 설치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개별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17) 최선·김현, 2023.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참고



할당함

- 이 과정에서 기초 단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나아가 국회에서 총정수 결정이 지연되면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할당 및 선거구획정 작업이 시일에 쫓겨 진행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원 총정수를 중앙정부가 법률로 결정하는 경우는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본에서도 과거 법률로 규정했었지만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라 법정정수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상한선을 규정하는 과도기를 거쳐, 2011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기초의회에 해당하는 시·정·촌 의회는 자율적으로 의원정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sup>18)</sup>
-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에서 기초 단위의 이러한 낮은 자율성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가지며, 기초의회 무용론은 기초의회 제도 부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그 이후 지방선거 시기마다 거론되고 있음
- 기초의회와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인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기초의원 자율성임
  - 한국정치의 양대 거대 정당은 자당 소속의 기초의원을 공천권을 무기로 삼아 줄세우기 해왔는데, 그 결과 중앙정치에서 여·야간 대립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의회정치에도 투영되며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인력 대우를 받고 있기도 함<sup>19)</sup>
  - 기초의원의 종속성은 거대 양당에 의해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일부 지역에선 사실상 한당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데에서 연유하는데 공천권만 의원의 의정활동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 정수 및 선거구획정제도 역시 기초의원의 종속적 관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의원의 선거구 존립 여부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제도 역시 기초의원 의정활동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가 획정위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광역의회가 선거구획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당파적 결정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명의 간사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장이 행정사무를 맡고 있다. 간사는 소속 광역단체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획정 초안을 사전에 준비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음
  - 광역단체장이 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획정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광역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18) 하세현, “일본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실증분석과 사례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p.10.

19) “지방정부…기초의원 줄세우기 언제까지?”(KBS뉴스 2022.02.22)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조례로 제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쪼개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광역의회는 확정안에서 제안한 4인 선거구를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제8회 지방선거에선 서울, 울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지역 광역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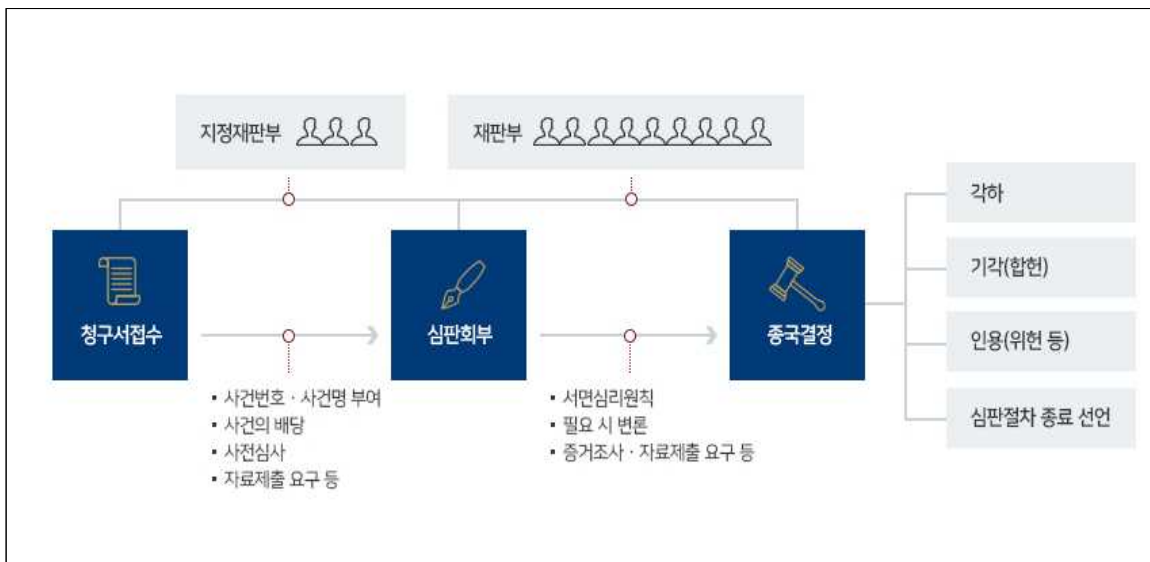
## 제3절 헌법소원심판<sup>20)</sup>

### 1. 헌법소원심판

#### ■ 헌법소원심판 의의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임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림 4-1]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출처: 헌법재판소 누리집(<https://www.ccourt.go.kr>)

20) 헌법재판소 누리집 내용 참조(<https://www.ccourt.go.kr>)



## ■ 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음
  -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음

## ■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함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사전심사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함
- 사전심사 결과 그 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제외),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 의견서의 제출

-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사건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후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종국결정의 유형

-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또는 합헌 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 ④ 심판절차 종료선언의 4가지가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함
-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음



## Ⅰ 결정의 효력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특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2. 헌법재판소 판례

### Ⅰ 공직선거법 제25조제3항 별표 1 등 위헌 확인 등(2020헌마412, 442, 2020헌마464 병합)

- 판시사항
  - 전라남도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중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및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전라남도 순천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선거구 획정 경위와 분할 획정 관련 지역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선거구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원 확인 (2010헌마401)

### ○ 판시사항

1.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및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
2. 포항시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010. 3. 30. 경상북도 조례 제3165호로 개정된 것) 별표 중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거구 획정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인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1. 한 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포항시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13명으로서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8,199명(포항시 인구수 합계 509,592명 ÷ 의원총수 28명)과 비교하면 +10.5%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포항시의 나머지 선거구 중 위 평균인구수 18,199명으로부터 상하 6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포항시 마’ 선거구의 선거구역인 우창동과 환여동은 경계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으나 각각 장량동과 인접하고 있고, 장량동 남단을 중심으로 한 우창동과 환여동의 경계 부근지역은 장량동의 북단지역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우창동과 환여동이 장량동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창동과 환여동



은 장량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장량동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장량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인 지역구와 최소인 지역구를 비교하여 그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포항시의회의원 선거구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인 지역구는 ‘포항시 자’ 선거구로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5,179명이고, 최소인 지역구는 ‘포항시 나’ 선거구로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470명이므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는 2:1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의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인구편차 2:1은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가 된다.
- 포항시의 최대선거구는 ‘포항시 자’ 선거구로서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25,179명이고, 최소선거구는 ‘포항시 나’ 선거구로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470명인바, 그 비율이 2:1을 넘으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뿐만 아니라 선거구의 획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한데, ‘포항시 마’ 선거구의 선거구역인 우창동과 환여동은 장량동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 없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 이 사건에서 1차적이고 핵심적인 판단대상은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와 해당 자치단체 내의 다른 선거구들에 있어서의 투표가치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의 인구수(유권자수)와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유권자수)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등선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허용비율은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는 엄격한 3: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항시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13명이고, 최소선거구인 ‘포항시 나’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7,470명으로서 허용한계 3:1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2 위한 확인(2010헌마 282)

### ○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타당하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구 동구 마 선거구란” 부분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1. 한 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 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2. 이 사건 “대구 동구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대구동구의회 전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면 +53.09%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대구동구의회의 나머지 선거구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대구동구의회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선거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권리관계에 대한 쟁송의 성격보다는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선거구 소송의 근본취지상 청구인의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수 비율이 2: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의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



계를 초과하게 되므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이 사건 최대선거구인 “대구 동구 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최소선거구인 “대구 동구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비율이 2:1을 넘으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 이 사건에서 1차적이고 핵심적인 판단대상은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와 해당 자치단체 내의 다른 선거구들에 있어서의 투표가치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의 인구수와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등선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허용비율은 광역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는 엄격한 3: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속한 “대구 동구 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최소선거구인 “대구 동구 마”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비율이 허용한계 3:1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타 시도의회 분석

### 제1절 동두천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1)</sup>

##### 1) 동두천시 현황

- 동두천시는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87,725명(남: 43,733명, 여: 43,992명)이며, 세대 수는 43,213세대임
  -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동두천시의 인구는 68,114명(남: 34,237명, 여: 33,877명)이었으며, 2023년 87,725명으로 1991년 대비 28.8% 증가함
- 면적은 95.66㎢로 경기도 면적의 0.9%이며, 전체 면적의 68%인 64.84㎢가 임야임
- 행정구역은 8동 159통 1,253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두천시 행정동은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 상패동의 8개 동으로 구성됨
- 동두천시 행정기구는 3국, 2담당관, 20과, 1의회, 1직속(2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71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28명임
- 동두천시 소재 학교는 26개교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대학교 2개임

##### 2) 의원 정수

-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7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6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임
-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1대에는 10명이었으나, 제9대에는 7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음
  - 제1대 의원 정수는 10명이었으나, 제3대 때부터 의원 정수가 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제9대까지 7명에서 변화가 없음
  - 제3대와 제4대에는 7명 모두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제4대 때부터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체제를 유지해옴
  - 제1대에 비해 제9대 때 인구가 28.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감소한 사례임
- 국회의원의 경우 제1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 당시 지역구는 동두천·양주군 일원이었으나, 현재는 동두천시·연천군 일원으로 동두천시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님

21) 동두천시의회 및 동두천시 누리집 참조(<https://council.ddc.go.kr/>, <https://www.ddc.go.kr/>)



- 동두천시 경기도의원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으나, 제2회 지방선거부터 2명으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동두천시 광역의원 정수는 2명임

## 2. 의회 조직구성

### 1) 동두천시의회 조직 구조

- 동두천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입법정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됨
- 동두천시의회는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별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입법정책팀과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업무는 인사 및 복무, 의원연수 및 교육, 표창관리, 의회 행사 운영, 청사관리, 회계 및 서무 등임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정례회 및 임시회 등의 의사 진행 및 회기 운영, 의회 기록물 관리, 속기 등임
  - 의회홍보팀의 주요업무는 의회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의회 견학 및 소식지 등 제작, 사진 촬영, 회의장 방송장비 관리, SNS 관리 등임
  - 입법정책팀의 주요업무는 의원 요구서 작성 및 관리, 의원연구단체 등 관리, 의원발의 안건 자료 관리, 의원정책 개발지원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각종의안 및 의원요구자료 검토보고, 민원사항(진정, 건의, 청원 등) 검토처리 등임

[그림 4-1] 동두천시의회 조직구조



## 2) 동두천시의회 인력 현황

- 동두천시의회 2024년 6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과 직원은 23명이며,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에 두는 5급 사무관은 2명임
  - 의정팀 인원은 팀장 포함 9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3명, 의회홍보팀은 팀장 포함 3명, 입법정책팀은 정책지원관 3명을 포함하여 5명, 전문위원실은 2명으로 구성됨
  -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함
  -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임



## 제2절 부산 중구의회

### 1. 기본 현황<sup>22)</sup>

#### 1) 부산광역시 중구 현황

- 부산광역시 중구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40,805명(남: 20,182명, 여: 20,623명)이며, 세대 수는 23,819세대임
  - 부산광역시 중구 통계연보를 보면 2001년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는 57,658명(남: 28,232명, 여: 29,426)이었으며, 2024년 40,805명으로 2001년 대비 29.3% 감소함
  - 부산광역시 중구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가 감소 추세이며, 남녀 성비는 여성이 1~2% 정도 많음
- 면적은 2.82km<sup>2</sup>로 부산광역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 행정구역은 9동 172통 736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동은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영주2동의 9개 동으로 구성됨
- 부산광역시 중구의 행정기구는 1실, 3국, 16과, 1의회, 1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은 506명이며, 4급 5명, 5급 31명, 6급 이하가 467명임

#### 2) 의원 정수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7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6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임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정수는 제1대에는 10명이었으나, 제9대에는 7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음
  - 제1대 의원 정수는 10명이었으나, 제3대 때부터 의원 정수가 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제9대까지 7명에서 변화가 없음
  - 제3대와 제4대에는 7명 모두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제4대 때부터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체제를 유지해옴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001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감소에 따라 의원 정수가 감소한 사례임

2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및 부산광역시 중구 누리집 참조(<https://council.ddc.go.kr/>, <https://www.bsjunggu.go.kr>)

- 국회의원의 경우 제1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원 당시 지역구는 중구 단일 선거구였으나, 극심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중구·영도구 선거구를 형성하여 중구 단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님
-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의원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으나, 제2회 지방선거부터 2명으로 감소하였고, 제5회 지방선거부터 1명으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광역의원 정수는 1명임

## 2. 의회 조직구성

###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조직 구조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의정계, 의사계 2계로 구성됨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2개의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윤리특별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계, 의사계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계의 주요업무는 의회운영, 업무용 차량 운행관리, 인사, 의원 관련 업무, 의정 등임
  - 의사팀계 주요업무는 의사, 정책지원, 홍보총괄, 속기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각종의안 검토보고, 의정활동, 의사진행 보좌 등임



[그림 4-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조직구조



##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인력 현황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2024년 6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과 직원은 10명이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에 두는 5급 사무관은 2명임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 구성 및 조직에는 직원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안내에는 14명으로 나와 있음
-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 1명, 계장 2명, 전문위원 2명, 주무관 6명, 정책지원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기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제3절 인천 용진군의회

### 1. 기본 현황<sup>23)</sup>

#### 1) 용진군 현황

- 용진군은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212명(남: 11,529명, 여: 8,683명)이며, 가구수는 12,456가구임
  - 용진군청 누리집 기본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인구는 18,739명(남: 10,104명, 여: 8,635명)이었으며, 2024년 20,212명으로 2010년 대비 8% 증가함
- 면적은 172.94km<sup>2</sup>로 인천광역시 면적의 17%이며, 전체 면적의 70%인 121.22km<sup>2</sup>가 임야임
- 행정구역은 7면 78리 272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진군의 면은 북도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영흥면, 자월면, 연평면 등 7면으로 구성됨
- 용진군 행정기구는 3국, 2실, 15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662명임
- 용진군 소재 학교는 22개교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임

#### 2) 의원 정수

- 용진군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7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6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임
- 용진군의회 의원 정수는 제1대에는 8명이었으나, 제9대에는 7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음
  - 제1대 의원 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2대 때부터 의원 정수가 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제9대까지 7명에서 변화가 없음
  - 제2대부터 제4대까지는 7명 모두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제5대 때부터 지역구 의원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체제를 유지해옴
  - 제1대에 비해 제9대 때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감소한 사례임
- 국회의원의 경우 제1대 용진군의회가 개원 당시 지역구는 안산시·용진군이었으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용진군이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인천광역시 중구·동구·강화군·용진군을 거쳐 현재는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용진군으로 용진군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님
- 용진군 경기도의원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2명이었으나, 제4회 지방선거부터 1명으로 감소하여 현재까지 용진군 광역의원 정수는 1명임

23) 용진군의회 및 용진군청 누리집 참조(<https://council.ongjin.go.kr>, <https://www.ongjin.go.kr>)



## 2. 의회 조직구성

### 1) 용진군의의회 조직 구조

- 용진군의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됨
- 용진군의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1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임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실·민원감사실에 속하는 사항, 행정복지국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속하는 사항, 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임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제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임
- 용진군의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회행정팀의 주요업무는 의회행정팀 행사, 예산, 회계, 부속실, 비서 등 기능,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관리, 의원 연구단체 업무 지원, 의회 언론 관리 등임
  - 의사지원팀의 주요업무는 회의진행, 의사진행, 회의록작성, 속기록 작성, 의안접수 및 배부, 청원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의안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 위원회 위원 질의 자료 제공,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의회 의결사항 관련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분석 지원 등임

[그림 4-3] 용진군의의회 조직구조



## 2) 용진군의의회 인력 현황

- 용진군의의회 2024년 6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과 직원은 20명이며, 직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5급 2명, 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공무원 2명임
- 의회행정팀 인원은 팀장 포함 8명, 의사지원팀은 팀장 포함 4명, 전문위원실은 7명으로 구성됨
- 「용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임



## 제4절 여수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4)</sup>

#### 1) 여수시 현황

- 여수시시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278,101명(남: 143,174명, 여: 134,927명)이며, 세대 수는 128,733세대임
- 2008년 여수시의 인구는 295,133명(남: 149,242명, 여: 145,891명)이었으며, 2024년 278,101명으로 2008년 대비 17,302명 감소함
- 면적은 512.3km<sup>2</sup>이며, 전체 면적의 58.3%인 298.9km<sup>2</sup>가 임야임
- 행정구역은 1읍, 6면,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수시 1읍, 6면, 20개동은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임
- 여수시 행정기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7국(43관·과), 의회사무국(1국, 3전문), 2직속기관(8과), 사업소(2단, 6과), 1출장소, 27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936명임
- 여수시 소재 학교는 161개교로 초등학교 48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5개, 대학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2개임

#### 2) 의원 정수

- 여수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7대 의회 기준 26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23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3명임
- 여수시의회는 1998년 이전에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에 통합되었음. 통합 이후 의원 정수는 제1대에 44명이었으나, 제7대에는 26명으로 18명이 감소하였음
  - 제1대 의원 정수는 44명이었으나, 제3대 의원 정수가 27명이었을 때를 제외하고 제7대까지 26명에서 변화가 없음
  -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26명 모두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지역구 의원 23명, 비례대표 의원 3명 체제를 유지해옴
  - 여수시의회 의원 정수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시·군 통합과 인구 감소에 따른 의원 정수 감소 사례임

24) 여수시의회 및 여수시 누리집 참조(<https://council.yeosu.go.kr>, <https://www.yeosu.go.kr>)

- 국회의원의 경우 여수시 통합 이후 제1대 여수시의회 당시 지역구는 여수시 일원과 여천시·여천군 일원이었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수시 일원이었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여수시 갑·을 2개의 선거구 임
- 여수시 전라남도도의원은 여수시로 통합 된 제3회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고, 제4회 지방선거 때에 4명으로 1명 증가하였으며, 제5회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6명으로 2명 증가하였음

## 2. 의회 조직구성

### 1) 여수시의회 조직 구조

- 여수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총무팀, 의사팀, 의정지원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5개 팀으로 구성됨
- 여수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음
-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임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은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임
  -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산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섬박람회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등임
- 여수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입법정책팀과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팀, 의사팀, 의정지원팀, 홍보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총무팀의 주요업무는 의회 운영계획 수립, 의원신분 기록 관리, 인사교육, 예산·회계 등임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각종 회의 소집·운영, 청원·진정 등 접수·처리, 회의진행 보좌, 회의록 발간 및 관리 등임
  - 의정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의전 행사지원, 청소년의회 운영, 의원 겸직신고 지원 등임
  - 홍보팀의 주요업무는 의정활동 홍보, 보도자료, 사진·영상 관리, 전산·홈페이지,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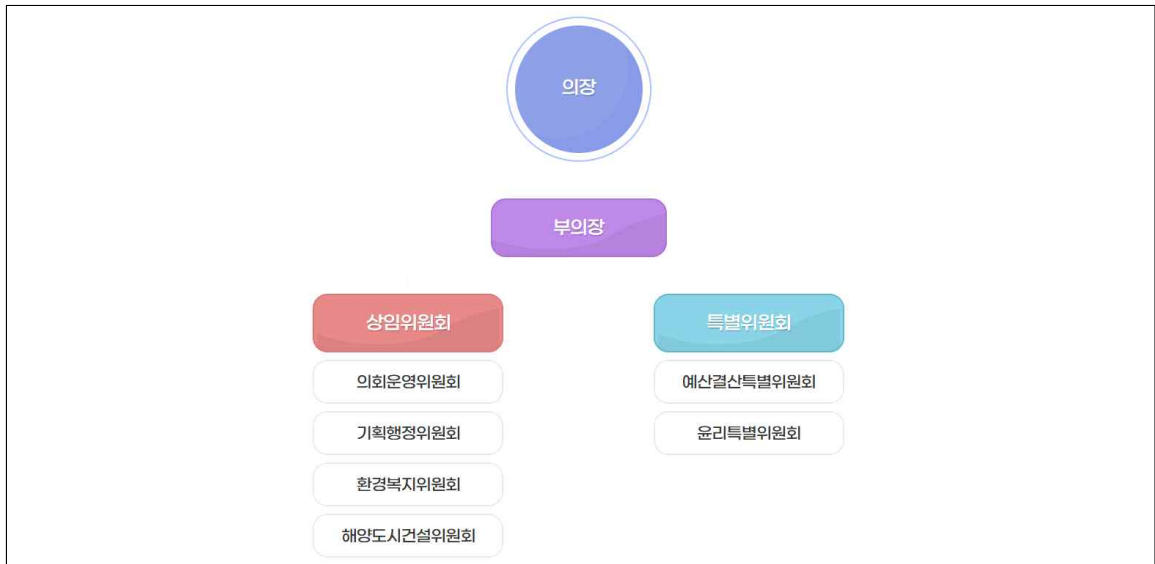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발간·배부 등임

- 입법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의원자료 요구수집, 조례안 입안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임

[그림 4-4] 여수시의회 조직구조



## 2) 여수시의회 인력 현황

- 여수시의회 2024년 6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국 직원은 53이며,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에 두는 4급 서기관은 1명이고, 5급 사무관은 3명임
- 총무팀 인원은 팀장,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여 18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6명, 의정지원팀은 팀장 포함 4명, 홍보팀은 팀장,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입법지원팀은 팀장, 정책지원관 등을 포함하여 10명, 전문위원실은 9명으로 구성됨
-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임

## 제5절 경주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5)</sup>

#### 1) 경주시 현황

- 경주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246,081명(남: 123,248명, 여: 122,833명)이며, 세대 수는 124,703세대임
  - 2014년 경주시의 인구는 262,110명(남: 131,153명, 여: 130,957명)이었으며, 2024년 246,081명으로 2014년 대비 16,029명 감소함
- 면적은 1,324.86㎢로 동 지역은 216.79㎢이며, 읍·면 지역은 1,108.28㎢ 임
- 행정구역은 4읍, 8면, 11동, 44법정동, 142법정리, 322행정리, 347통, 3,413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주시 행정구역은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 외동읍 등 4개 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등 8개 면, 중부동, 황오동, 성건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등 11개 동으로 구성됨
- 경주시 행정기구는 5국, 1실, 6관, 33과, 1의회, 1소, 1센터, 2본부, 7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1,74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51명임
- 경주시 소재 학교는 87개교로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9개, 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4개임

#### 2) 의원 정수

- 경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21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18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3명임
- 경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경주시갑·을이 통합한 제3회 지방선거에는 24명이었으나, 제9대에는 21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음
  - 제3회 지방선거 의원 정수는 24명이었으나, 제4회 지방선거 의원 정수가 21명으로 3명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제9대까지 21명에서 변화가 없음
  - 제3회 지방선거 의원 정수 24명은 전부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의원 정수가 3명이 감소하여 21명이었던 제4회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18명, 비례대표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이후 제9대까지 변화가 없음
  - 제6대에 비해 제9대 때 인구가 약 16,000명 감소하였으나, 의원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던 사

25) 경주시의회 및 경주시 누리집 참조(<https://council.gyeongju.go.kr>, <https://www.gyeongju.go.kr>)



## 레임

- 국회의원의 경우 통합 제1대 경주시의회가 개원 당시 지역구는 경주시 일원과 경주군 일원 2곳이었으나, 현재는 경주시 일원으로 경주시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 임
- 경주시 경상북도의원은 경주시갑·을이 통합한 제3회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으나, 제4회 지방선거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제5회 지방선거부터 4명으로 2명 증가하여 현재까지 경주시 광역의원 정수는 4명임

## 2. 의회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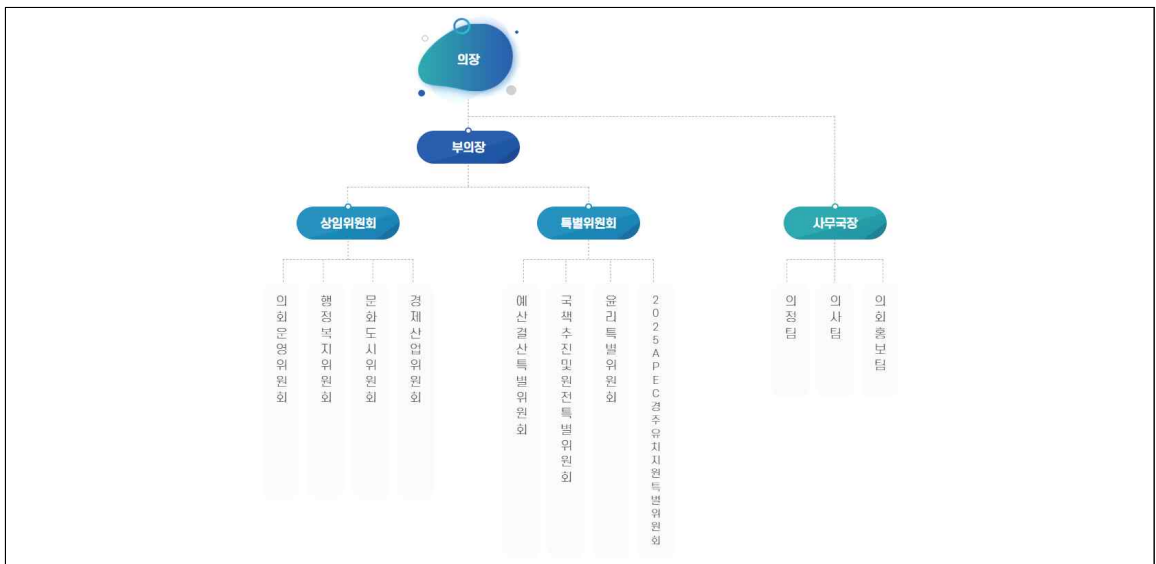
### 1) 경주시의회 조직 구조

- 경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됨
- 경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 2025APEC경주유치지원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됨
-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임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인구청년담당관, 디지털도시담당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임
  -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동공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임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경제산업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임
- 경주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입법정책팀과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업무는 기본운영계획수립, 종합조정, 문서, 보안, 관인 관리, 의회에산편성 및 집행, 의원등록관리, 직원인사관리, 의회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 통신기기 등 각종 물품관리, 각종 연설문 작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임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분리, 의결 문서의 보존 및 의사일정 관리, 민원 상담실 운영관리 등임

- 의회홍보팀의 주요업무는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의회사, 의정백서, 의회보, 의회안내책자 등 각종홍보책자 발간, 각종 인터뷰 및 대담 자료작성,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공, 의회관련 보도자료 수집,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 기타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의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지원,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 활동 지원,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등임

[그림 4-5] 경주시의회 조직구조



## 2) 경주시의회 인력 현황

- 동두천시의회 2024년 6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국 직원은 41명이며,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원은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3명, 6급 이하 36명 임
- 의정팀 인원은 팀장, 공무원 포함 12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6명, 의회홍보팀은 팀장 포함 4명, 전문위원실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됨
-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



## 제6절 강릉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6)</sup>

#### 1) 강릉시 현황

- 강릉시는 2024년 기준으로 209,439명(남: 103,759명, 여: 105,680명)이며, 세대 수는 103,682세대임
-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은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1995년에 통합)되기 이전이며, 당시 강릉시 인구는 147,908명(남: 73,688명, 여: 74,220명)이었으며, 명주군 인구는 71,355명(남: 35,876명, 여: 35,479명)으로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하면 219,263명(남: 109,564명, 여: 109,699명)임
- 2024년 강릉시 인구는 209,439명으로 1991년 대비 9,824명 감소함
- 면적은 1,040.83km<sup>2</sup>로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6.17%이며, 전체 면적의 80%인 832.72km<sup>2</sup>가 임야임
- 행정구역은 1읍, 7면, 13동, 510리, 2,839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강릉시 읍·면·동은 주문진읍 1읍, 성산면·왕산면·구정면·강동면·옥계면·사천면·연곡면 7면, 홍제동·중앙동·옥천동·교1동·교2동·포남1동·포남2동·초당동·송정동·내곡동·강남동·성덕동·경포동 13동으로 구성됨
- 강릉시 행정기구는 5국, 1단, 2관, 2직속기관,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1,519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38명임
- 강릉시 소재 학교는 67개교로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1개, 대학교는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4개, 특수학교 2개임

#### 2) 의원 정수

-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12대 의회 기준 19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17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명임
-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1대에는 10명이었으나, 제9대에는 7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음
- 제1회 지방선거 의원 정수는 강릉시갑이 21명, 강릉시을이 9명으로 총 30명이었으나, 제2회 지방선거에는 강릉시갑 11명, 강릉시을 11명으로 총 22명이었으며, 제1회 지방선거 대비 8

26) 강릉시의회 및 강릉시 누리집 참조(<https://www.gncl.go.kr/>, <https://www.gn.go.kr/>)

명 감소하였음

- 제3회 지방선거부터 강릉시갑·을이 강릉시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었고 의원 정수는 21명이었으며, 제4회 지방선거 의원 정수는 18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대비 3명이 감소함
-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 의원 정수는 18명(지역구 16명, 비례대표 2명)이었으나, 제8회 지방선거 때 19명(지역구 17명, 비례대표 2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명 증가함
- 제3회 지방선거 때는 21명 모두 지역구 의원이었으나,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는 지역구 16명, 비례대표 2명이었고, 제8회 지방선거 때는 지역구 17명, 비례대표 2명으로 바뀌었음
- 제1회 지방선거에 비해 제8회 지방선거 때 인구가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증가한 사례임
- 국회의원의 경우 제1대 강릉시의회가 개원 당시 지역구는 강릉시 일원과 명주군·양양군 일원이었으나, 현재는 강릉시 일원으로 강릉시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 임
-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강릉시갑 3명, 강릉시을 3명 총 6명이었으나, 제2회 지방선거 때는 강릉시갑 2명, 강릉시을 2명 총 4명으로 제1회 지방선거 대비 2명 감소하였음
-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강릉시 갑·을이 통합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정수는 3명이었으며, 제4회 지방선거 때는 2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대비 1명 감소하였으나, 제5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 4명으로 제3회 지방선거 대비 2명 증가하였음
- 제8회 지방선거 때는 5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명이 증가하였음

## 2. 의회 조직구성

### 1) 강릉시의회 조직 구조

- 강릉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총무담당,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소통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됨
- 강릉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3개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임
  - 행정위원회 소관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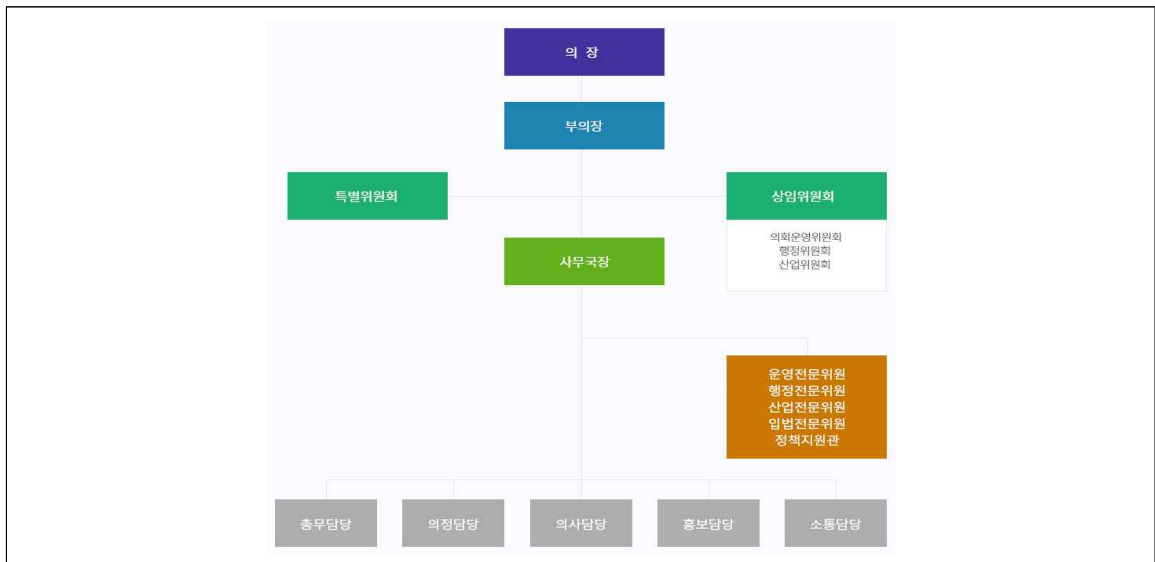
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임

- 산업위원회 소관은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임

○ 강릉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담당,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소통담당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총무담당 주요업무는 서무·인사, 예산·회계, 청사관리 등임
- 의정담당 주요업무는 의원등록·행사추진, 급여관리·의원포상관리 등임
- 의사담당 주요업무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업무, 속기 등임
- 홍보담당 주요업무는 보도자료 작성, 방송영상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 의정활동 촬영, 도서관 관리 등임
- 소통담당은 의장 수행 및 일정관리, 의전차량 운영, 의장·부의장 부속실 운영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등임

[그림 4-6] 강릉시의회 조직구조



## 2) 강릉시의회 인력 현황

- 강릉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공개된 2024년 1월 기준 의회사무국 정원은 33명, 현원 31명이며, 의회사무국에는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을 둠

- 총무담당 인원은 팀장, 청원경찰 포함 5명, 의정담당은 팀장, 공무원 포함 4명, 의사담당은 팀장 포함 6명, 홍보담당은 팀장, 공무원 포함 4명, 소통담당은 팀장, 공무원 포함 4명, 전문위원실은 정책지원관 포함 12명으로 구성됨
-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입법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행정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산업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임

## 제7절 광주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7)</sup>

#### 1) 광주시 현황

- 광주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07,192명(남: 210,074명, 여: 197,118명)이며, 세대 수는 170,497세대임
- 2004년 광주시의 인구는 212,621명(남: 110,185명, 여: 102,436명)이었으며, 2024년 407,192명으로 2004년 대비 194,571명 증가함
- 면적은 430.99km<sup>2</sup>이며, 전체 면적의 65.3%인 281.63km<sup>2</sup>가 임야임
- 행정구역은 2읍, 4면, 1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주시 1읍, 6면, 20개동은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 임
- 광주시 행정기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6국, 3담당관, 34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6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67명임
- 광주시 소재 학교는 62개교로 초등학교 34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는 4개, 특수학교 4개임

27) 광주시의회 및 광주시 누리집 참조(<https://www.gjcouncil.go.kr/>, <https://www.gjcity.go.kr>)



## 2) 의원 정수

-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11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9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명임
- 광주시의회는 제1대 의원 정수는 9명이었으나, 제9대 의원 정수는 11명으로 2명 증가함
  - 제1대 의원 정수는 9명, 제2대 의원 정수는 10명, 제3대 의원 정수는 9명, 제4대 의원 정수는 11명, 제5대 및 제6대 의원 정수는 8명, 제7대 의원 정수는 9명, 제8대 의원 정수는 10명, 제9대 의원 정수는 11명으로 의원 정수가 계속하여 변경됨
  - 제4대까지는 지역구 의원만 있었으나, 제5대부터 비례대표 1명이 신설되었고, 제9대에서는 2명으로 1명 증가됨
  - 의회 개원 이후 대 수마다 의원 정수가 계속 변화된 사례임
- 국회의원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에는 선거구가 광주군 일원이었으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하남시·광주군이었던가 제16대에는 광주군 일원이었고, 제17대에 광주군에서 광주시로 승격된 이후 제19대까지 광주시 일원이었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광주시 갑·을로 나뉘는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광주시 경기도의원은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고, 제2회 때부터 제6회 때까지 2명이었으며, 제7회 이후 현재까지 4명임

## 2. 의회 조직구성

### 1) 광주시의회 조직 구조

- 광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개 팀으로 구성됨
- 광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음
-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심의, 의회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의장이 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임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정책지원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국 소관에 관한 사

항,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광주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임

-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기후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발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업전략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임

○ 광주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업무는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인사, 회계일반, 포상, 의원신분관리 등임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지원 및 회의록 작성 관리, 서면진정, 청원처리,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처리 등임
- 홍보팀의 주요업무는 의정활동 영상 촬영 및 홍보, 의회활동 사진 기록보존, 의정소식지 및 홍보책자 발행, 의원발의 조례 웹툰 제작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의정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임

[그림 4-7] 광주시의회 조직구조



## 2) 광주시의회 인력 현황

- 광주시의회 2024년 7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은 25명이며, 의회사무국에 두는 4급 서기관은 1명이고, 5급 사무관은 2명임
- 의정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7명, 홍보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됨
-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제정·개



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원임

## 제8절 하남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8)</sup>

#### 1) 하남시 현황

- 하남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330,003명(남: 164,137명, 여: 165,866명)이며, 세대 수는 141,764세대임
- 2007년 하남시의 인구는 135,990명(남: 69,799명, 여: 66,191명)이었으며, 2024년 인구는 330,003명으로 2007년 대비 194,013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함
- 면적은 93.04km<sup>2</sup>이며, 전체 면적의 80.9%인 75.30km<sup>2</sup>가 녹지지역 임
- 행정구역은 1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남시 14개 행정동은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임
- 하남시 행정기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6국, 1단, 3담당관, 28과, 1의회(국), 1직속(2과, 1지소), 2소(6과), 14동, 19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1,097명 임
- 하남시 소재 학교는 87개교로 유치원 38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 특수학교 1개, 공민학교 1개 임

#### 2) 의원 정수

- 하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10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9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임
- 하남시의회는 제1회 동시 지방선거 의원 정수는 11명이었으나, 제9대 의원 정수는 10명으로 1명 감소함
  - 제1회 동시 지방선거 의원 정수는 11명, 제2회부터 제3회 동시 지방선거까지는 9명, 제3회부터 제6회 동시 지방선거까지는 7명,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때는 9명이었다가 제8회 동시

28) 하남시의회 및 하남시 누리집 참조(<https://council.hanam.go.kr/>, <https://www.hanam.go.kr/>)

지방선거 때는 10명 임

- 제3회 동시 지방선거까지는 지역구 의원만 있었으나, 제4회 동시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1명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의회 개원 이후 의원 정수가 계속 변화된 사례임
- 국회의원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에는 선거구가 하남시·광주군 일원이었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인구가 분구 기준을 확실히 넘어서면서 하남시 갑·을 2개의 선거구로 변경됨
- 하남시 경기도의원은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고, 제2회 때부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까지 2명이었으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3명임

## 2. 의회 조직구성

### 1) 하남시의회 조직 구조

- 하남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4개 팀으로 구성됨
- 하남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까지 한시적인 경우에 한함) 임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조정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하남문화재단, 하남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임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임
- 하남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정책지원팀과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업무는 업무용 차량 운전, 청사관리, 인사 업무, 복무, 포상, 직원 교육, 의원 재산등록, 예산 및 회계 업무 등임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의안심의 자료 수집 및 의안관리,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임
- 홍보팀의 주요업무는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제작, 방문기념품 제작 및 관리, SNS 운영, 시의회 보도자료 작성 및 검토,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 보존·관리 등임
- 정책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정책지원 업무, 의원연구단체, 의원 연수,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의원 교육 지원, 의원등록 및 현황 관리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의안심사 및 검토, 의사진행 보좌 등임

[그림 4-8] 하남시의회 조직구조



## 2) 하남시의회 인력 현황

- 하남시의회 2024년 7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국 직원은 27명이며,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에 두는 4급 서기관은 1명이고, 5급 사무관은 2명임
- 의정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3명, 홍보팀은 3명, 정책지원팀은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됨
-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임

## 제9절 의왕시의회

### 1. 기본 현황<sup>29)</sup>

#### 1) 의왕시 현황

- 의왕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155,593명(남: 77,093명, 여: 78,500명)이며, 세대 수는 64,402세대임
  - 2013년 의왕시의 인구는 161,023명(남: 80,570명, 여: 80,453명)이었으며, 2024년 인구는 155,593명으로 2013년 대비 5,430명이 감소함
- 면적은 54.03㎢로 경기도의 0.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56%인 30.25㎢가 임야 임
- 행정구역은 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왕시 6개 행정동은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임
- 의왕시 행정기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4국, 3담당관, 27과, 1의회(과), 1직속(2과, 10팀), 1소(3과), 6동, 15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769명 임
- 의왕시 소재 학교는 48개교로 유치원 19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1개 임

#### 2) 의원 정수

- 의왕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7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6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임
- 의왕시의회는 제1대 의원 정수는 8명이었으나, 제9대 의원 정수는 7명으로 1명 감소함
  - 제1대 의원 정수는 8명, 제2대 의원 정수는 9명, 제3대 이후 현재까지 의원 정수는 7명 임
  - 제4대 의회까지는 지역구 의원만 있었으나, 제5대 의회부터 비례대표 1명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의회 개원 초기 이후 의원 정수가 감소한 사례 임
- 국회의원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단독 선거구가 아닌, 의왕시·과천시 선거구 임
- 의왕시 경기도의원은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3명이었으나, 제2회 때부터 현재까지 2명을 유지하고 있음

29) 의왕시의회 및 의왕시청 누리집 참조(<https://council.uiwang.go.kr/>, <https://www.uiwang.go.kr/>)



## 2. 의회 조직구성

### 1) 의왕시의회 조직 구조

- 의왕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4개 팀으로 구성됨
- 의왕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특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음
- 의왕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왕도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이 있음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정책지원팀과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업무는 의회운영 계획 수립, 청서관리, 인사 업무, 복무, 포상, 직원 교육, 의원 재산등록, 예산 및 회계 업무 등임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 의정백서 발간, 회의록 관리, 의원 월례회의 운영 등임
  - 의회홍보팀의 주요업무는 디지털 홍보게시판 관리, 영상물 제작 및 SNS 관리,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의회홍보 및 의정소식지 제작 등임
  - 정책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의원 요구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협의,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원 주관 간담회, 토론회 개최,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지원 및 입법 예고, 시정질의서 및 5분발언 자료수집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의안검토 및 심사,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특위 운영 및 청원심사, 민원처리 등임

[그림 4-9] 의왕시의회 조직구조



## 2) 의왕시의회 인력 현황

- 의왕시의회 2024년 7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과 직원은 22명이며,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에는 5급 사무관 2명만 있음
- 의정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3명, 의회홍보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정책지원팀은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은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됨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임

# 제10절 군포시의회

## 1. 기본 현황<sup>30)</sup>

### 1) 군포시 현황

- 군포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258,991명(남: 128,501명, 여: 130,490명)이며, 세대 수는 112,863세대임
- 1991년 군포시의 인구는 107,387명(남: 54,477명, 여: 52,910명)이었으며, 2024년 인구는 258,991명으로 199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함

30) 군포시의회 및 군포시청 누리집 참조(<https://www.gunpocouncil.go.kr>, <https://www.gunpo.go.kr>)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 면적은 36.42km<sup>2</sup>로 경기도의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임야가 15.39km<sup>2</sup>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행정구역은 1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군포시 12개 행정동은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대야동, 송부동 임
- 군포시 행정기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5국, 3실, 27과, 1의회(과), 2소(4과, 1지소), 동행정보지센터 8동, 18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050명 임
- 군포시 소재 학교는 86개교로 유치원 37개,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1개, 대안학교 1개 임

### 2) 의원 정수

- 군포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9대 의회 기준 9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이 8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임
- 군포시의회는 제1대 의원 정수는 10명이었으나, 제9대 의원 정수는 9명으로 1명 감소함
  - 제1대 의원 정수는 10명, 제2대 의원 정수는 20명, 제3대 의원 정수는 11명, 제4대 의원 정수는 10명, 제5대 이후 현재까지 의원 정수는 9명 임
  - 제4대 의회까지는 지역구 의원만 있었으나, 제5대 의회부터 비례대표 1명이 신설되어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의회 개원 초기 이후 의원 정수가 감소한 사례 임
- 국회의원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에는 선거구가 시흥시·군포시였으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군포시 단독 선거구로 변경되었음.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군포시 갑·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뉘었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다시 군포시 단일 선거구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군포시 경기도의원은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는 3명이었고, 제2회부터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는 2명이었으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4명으로 2명 증가하였음

## 2. 의회 조직구성

### 1) 군포시의회 조직 구조

- 군포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과는 의정팀, 의사팀, 입법홍보팀 3개 팀으로 구성됨

- 군포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관련 조례안, 규칙안 및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임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동 행정복지센터에 속하는 사항, 군포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군포시청소년재단에 속하는 사항 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기업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임
- 군포시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의원 의정지원은 입법홍보팀과 전문위원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팀, 의사팀은 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의정팀의 주요업무는 주요업무 계획, 청서관리, 인사 업무, 복무, 포상, 직원 교육, 의원 재산등록, 예산 및 회계 업무 등임
  - 의사팀의 주요업무는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및 운영, 의사일정 관리, 의정모니터단 운영, 회의록 관리, 방청관리, 의정중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임
  - 입법홍보팀의 주요업무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 의회 자치법규 정비, SNS 운영, 보도자료 작성 및 내역 관리, 의정방향 광고 집행 및 관리, 의회소식지 관련 업무, 의회 인터뷰 관련 업무 등임
  -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검토 보고 등임



[그림 4-10] 군포시의회 조직구조



## 2) 군포시의회 인력 현황

- 군포시의회 2024년 7월 기준 누리집에 공개된 의회사무과 직원은 24명이며,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과에는 4급 서기관은 없으며, 5급 사무관 3명만 있음
- 의정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 의사팀은 팀장 포함 5명, 입법홍보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됨
-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임

## 제5장 해외사례 분석<sup>31)</sup>

### 제1절 일본

#### 1. 지방의회 제도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의 형태이고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2계층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선거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각 지자체 의회의 의원선거로 구분됨

<표 5-1> 일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의회
지정도시 시장	지정도시 의회
지정도시 이외의 시장	지정도시 이외의 시의회
특별구의 구장	특별구의회
정·촌의 장	정·촌의회

출처: 정병기(2014, p68)

-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보궐선거 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일본 국민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보유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8조)
- 일본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지자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을 선출하는 상대다수제이며, 지방의회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의회 의원선거와 시정촌의회 의원선거 모두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수만큼 상대다수득표자가 당선됨
- 도도부현 의회 선거의 경우 1인 선거구부터 17인 선거구까지 복수의 선거구제를 운용하나 시정촌 의회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정촌 전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운용되며, 또 투표 시에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투표용지에 적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하세현 2019, 10-11)
- 일본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시간의 흐름과 인구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1998년도에는 6만 4천여 명이었던 지방의회 의원 숫자는 2018년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까지 줄어 그 규모가 절반이 되었으며, 그와 같은 정원 수의 감소는 광역단체인 도도부현 의회 의원이나 시 및 구의회 의원보다는 특히 기초단체인 정촌 의회 의원 수의 감축에 따른 변화

31)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재정리



로 파악됨

- 시간이 흐를수록 이처럼 가장 기초의회 단위인 정촌의회 의원 정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일본의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과 깊은 관련 있고, 특히 일본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가 급증하는 까닭도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계가 깊음(하세헌 2020)
- 하세헌(2020)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 지방선거 중 정촌의회 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활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한국도 지방일수록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본의 현상은 한국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위에서부터 무투표당선자가 점차 늘어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 1) 일반원칙

- 일본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선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구획을 고려하고,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중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는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제7항)
- 각 선거구에서 선거하여야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수는 인구에 비례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체로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제8항)
- 그 밖에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선거구 및 각 선거구에서 선거하여야 하는 의원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함(「공직선거법」 제15조제10항)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 대표성을 우선하여 정하되 그 외 교통 사정과 지세 및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리하자면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 대표성을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되 그 외 교통 사정과 지세 및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2011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의회의 의원 정수를 인구 구분에 따른 상한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인구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철폐되었음. 그럼에도 이전과 같이 의원 정수는 다음 <표 5-2>와 같은 인구 구분에 따른 한계 내에서 정하고 있음(하세헌 2019, 10)

〈표 5-2〉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지방의회 의원 정수 상한 수

지자체	인구 구분	정수 상한 수(명)
도도부현	도쿄도	130
	100만 이상	120
	75만 이상 100만 미만	46
	75만 미만	40
시구	250만 이상	88
	210만 이상 250만 미만	88
	170만 이상 210만 미만	80
	130만 이상 170만 미만	72
	90만 이상 130만 미만	64
	50만 이상 90만 미만	56
	30만 이상 50만 미만	46
	20만 이상 30만 미만	38
	10만 이상 20만 미만	34
	5만 이상 10만 미만	30
정촌	5만 미만	26
	2만 이상	26
	1만 이상 2만 미만	22
	5천 이상 1만 미만	18
	2천 이상 5천 미만	14
	2천 미만	12

출처: 하세현(2019, p10)

## 2) 도도부현 의회

-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도도부현 의회의 의원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0조제1항)
- 의원정수의 변경은 일반선거의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90조제2항, 다시 말해서 임기 중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불가능), 예외적으로 도도부현의 폐지 및 새로운 도도부현의 설치나 편입 등의 지방단체 통·폐합 등의 변경으로 인구의 증가가 현저히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의 임기 중에도 의원 정수를 증가할 수 있음(같은 법 제90조제3항)

〈표 5-3〉 일본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선거구

도도부현	① 하나의 시(지정도시의 경우에는 그 행정구의 구역) ② 한 시의 구역과 인접한 정촌의 구역을 합친 구역 ③ 인접해 있는 정촌의 구역을 합한 구역 셋 중 하나를 기본으로 하며 조례로 정함( § 15①, § 269)
지정도시	· 행정구 구역( § 15⑥)
기타 시정촌	· 원칙적으로 해당 시정촌 구역으로 선거구가 되나, 특히 필요한 경우 조례로 선거구 설치( § 15⑥)

참고: 괄호 속 조항은 공직선거법



출처: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451018.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451018.pdf)

- 한편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의 선거구 또한 조례로 정하며, 도도부현 의회 선거구는 (1) 하나의 시의 구역, (2) 하나의 시의 구역과 인접하는 정촌의 구역을 합친 구역, (3) 인접하는 정촌의 구역을 합친 구역 중에서 하나를 기본으로 함(「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표 5-3> 참조)
-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도부현 선거구는 해당 도도부현의 인구를 해당 도도부현 의회 의원 정수로 나누어 얻은 수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이 경우에, 한 시의 구역 인구가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절반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시정촌의 구역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설치함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 또 하나의 시 구역의 인구가 의원 1인당 인구의 절반 이상이라도 의원 1인당 인구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시정촌의 구역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둘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제3항)

### 3) 시정촌 및 지정도시 의회

-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정촌 의회 의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 도도부현 의회와 마찬가지로 시정촌 의회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 변경은 일반 선거의 경우가 아니면 실시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91조제2항), 지자체 동폐합 등으로 현저한 인구의 증감이 있었던 시정촌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의원 정수를 증감할 수 있음(같은 법 제91조제3항)
  - 만일 지자체 동폐합 등으로 임기 중에 의원정수를 변경한 결과 시정촌 의원의 정수가 초과된 때에는 해당 의원의 임기 중에는 그 수를 정수로 함(같은 법 제91조제4항)
- 시정촌 의회의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정촌 구역으로 선거구가 되지만, 시정촌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 의회의 의원 선거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해 선거구를 둘 수 있음
  - 지정도시에 대해서는 구의 구역을 선거구로 함(「공직선거법」 제15조제6항)
  - 한 정촌 구역의 인구가 의원 1인당 인구의 절반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촌의 구역으로써 한 선거구로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제4항)
- 지정도시는 행정구 구역을 선거구역으로 하지만 구가 둘 이상인 중의원(소선거구 선출)의 선거구에 속하는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해당 각 구역을 시정촌의 구역으로 볼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제4항)

## 제2절 대만

### 1. 지방의회 제도

- 대만은 모든 지방공무원의 선거를 통합하여 하루에 모두 처리하는데, 이를 ‘구합일 선거’라고 부르기도 함(지은주 2018)
- 지방선거에서는 ① 직할시 단체장, ② 직할시 시의원, ③ 현과 시의 단체장 ④ 현과 시의 시의원, ⑤ 향진시의 단체장, ⑥ 향진시의 주민대표, ⑦ 촌장과 이장, ⑧ 직할시 원주민구 단체장, ⑨ 직할시 원주민구 주민대표 총 아홉가지 유형의 지방공무원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4년 임
- 대만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선출 상대다수제로 선출함
  - 지방의회 각 급의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단기비양식투표제으로써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가 여러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태도를 채택하고 있고 득표수 순으로 당선됨(이경아 2015)
  - 가장 하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촌·리 단위의 경우 자치단체장만 선출직으로 존재하며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음

###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 1) 의원 정수

- 대만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관하여 대만의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음
  - 다만, 2018년 대만의 지방선거의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 의석 규모를 살펴보면 의원 정수가 인구가 많은 직할시일수록 의석 수가 많은 반면 인구가 적은 현시일수록 의석 규모도 작은 경향이 나타나, 인구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었음
- 2018년 대만 지방선거 사례를 기준으로 <표 5-4>는 6개 직할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석 규모를 보여주고, <표 5-5>는 16개의 현·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석 규모를, <표 5-6>은 향진시 단체장 및 주민대표 의석 규모를, <표 5-7>은 직할시 원주민구 단체장 및 주민대표 의석 규모를, 마지막으로 <표 5-8>은 촌장 및 이장 의석 수를 나타냄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표 5-4> 직할시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직할시 선거구	단체장	지방의회
타이베이시	1	63
신베이시	1	66
타오위엔시	1	63
타이중시	1	65
타이난시	1	57
가오슝시	1	66
합계	6	380

출처: <https://db.cec.gov.tw/histMain.jsp?voteSel=20181101B1>

<표 5-5> 현시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구분	현·시 선거구	단체장	지방의회
대만성	지룽시	1	31
	이란현	1	34
	신주현	1	36
	신주시	1	34
	모률현	1	38
	장화현	1	54
	나터우현	1	37
	운림현	1	43
	가의현	1	37
	가의시	1	23
	병동현	1	55
	대동현	1	30
	화련현	1	33
	평후현	1	19
푸젠성	진먼현	1	19
	렌장현	1	9
	합계	16	523

출처: <https://db.cec.gov.tw/histMain.jsp?voteSel=20181101C1>

〈표 5-6〉 향진시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구분	향진시 선거구	단체장	지방의회
대만성	신주현	13	142
	묘를현	18	193
	장화현	26	317
	난터우현	13	163
	운림현	20	228
	가익현	18	193
	병동현	33	334
	이란현	12	131
	화련현	13	142
	대동현	16	136
	평후현	6	51
푸젠성	진먼현	6	47
	렌장현	4	21
합계		198	2,098

출처: <https://db.cec.gov.tw/histMain.jsp?voteSel=20181101D1>

〈표 5-7〉 직할시 원주민구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구분	원주민구 선거구	단체장	지방의회
직할시	신베이시:오래구	1	7
	타오위엔시: 부흥구	1	11
	타오위엔시: 화평구	1	11
	가오슝시: 무림구, 도원구, 나마하구	3	21
합계		6	50

출처: <https://db.cec.gov.tw/histMain.jsp?voteSel=20181101D1>



<표 5-8> 촌장 및 이장 단체장 의석 수(2018년)

구분	촌리	단체장	
직할시	타이베이시	456	
	신베이시	1,029	
	타오위엔시	504	
	타이중시	624	
	타이난시	649	
	가오슝시	887	
	소계	4,149	
현시	대만성	지룽시	157
		이란현	233
		신주현	192
		신주시	121
		묘률현	274
		장화현	589
		난터우현	262
		운림현	390
		가의현	356
		가의시	84
		병동현	461
		대동현	147
		화련현	175
	평후현	95	
	푸젠성	진면현	37
		렌장현	22
		소계	3,595
		총계	7,744

출처: <https://db.cec.gov.tw/histMain.jsp?voteSel=20181101E1>

## 2) 선거구 결정 방식

- <표 5-4>부터 <표 5-8>에 이르기까지 대만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대만의 공직선거법인 「공직인원선거과면법」은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이 곧 선거구가 됨을 알 수 있음
  - 다만, 원주민 주민대표 선거구의 경우 행정구역 내에서 선거구를 분할하며, 원주민 단체장 선거와 다른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인 수를 별도로 구분함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원주민이란 대만이라는 섬에 중국 한족들이 이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거주해온 약 16개의 소수 민족을 가리킴
  - 한족은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구분되는데, 본성인은 중국 대륙에서 이주해 온 초기 이주자들로서 명청시절 대만 섬에 건너와 뿌리르 내리고 사는 사람들 임. 반면에 외성인은 강제

- 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배하면서 대만 섬으로 이주했던 당시에 건너왔던 이들을 일컫음
- 본성인이 전체 인구의 약 84%를 차지하는 반면 외성인은 약 14%를 차지하고, 나머지 원주민은 2% 수준에 불과함(한겨레 2016)
- 대만의 원주민들은 청나라 시절부터 대만 섬에 존재해왔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자치를 이어왔으나 1949년 중국 공산당에 국민당 정부가 패한 뒤 대만섬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정부에 토지를 몰수당하고 문화를 억압받는 등의 차별을 받은 역사가 있음
- 1980년대부터는 국민당 정부의 억압에 맞서기 시작해왔고 이후 권리를 회복해 옴(한겨레 2016)
- 대만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인구분포, 지리적 환경, 교통상황, 역사적 기원 및 당선자의 정원을 고려하여 구분하다고 「공직인원선거과면법」 제37조에서 선거구 획정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5-9> 대만 「공직인원선거과면법」

**제36조** 지방공직자 선거의 선거구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직할시의원, 현·시의원, 향의원(진·시)민대표·원주민구민대표 선거는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한다. 당선자가 원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경우에, 선거구는 행정구역 내에서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선거구는 평지의 원주민, 산지의 원주민 또는 행정구역 내의 선거구로 구분해야 한다.
2. 직할 시장, 현시장, 향진시장, 원주민구장, 촌리장 선거는 각각 행정구역에 따라 선거구가 된다. 전항의 행정구역에 따라 분할된, 직할시의원, 현·시의원, 향의원(진·시)민대표의 선거구에서 선출될 인구는 원주민의 인구수를 공제한 것 이어야 한다.

**제37조**  
(중략) 전항의 선거구는 행정구역, 인구분포, 지리적 환경, 교통여건, 역사적 기원 등을 고려하여 분할한다.

출처: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20010>

## 제3절 영국

### 1. 지방의회 제도

- 2000년 「지방정부법」 제정 후부터 영국의 지역별 지방의회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음
- 잉글랜드를 제외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단층 구조로서 광역기능과 기초기능이 통합된 통합형 지방의회를 각각 32개, 22개, 11개씩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특히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표 5-10> 영국 지역별 지방의회 수

지역	지방의회 수
잉글랜드	333
스코틀랜드	32
웨일스	22
북아일랜드	11

출처: <https://www.gov.uk/guidance/local-government-structure-and-elections>

-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내 지방의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하나의 의회가 지방정부의 전 기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를 “1계층 의회” 라 하고, 하나의 지역 내 작은 의회와 다른 하나의 지역 내 큰 의회가 지방정부의 여러 기능을 서로 분담하는 형태의 지방의회를 “2계층 의회” 라고 함

### 1) 2계층 의회

- 2계층 의회는 큰 지역 단위인 카운티 의회와 작은 지역 단위인 디스트릭트 의회로 나눌 수 있음. 전자를 상위의회, 후자를 하위의회라고 부르기도 함
- 영국 잉글랜드에서 카운티 단위의 지방의회는 총 24개가 있음
  - 카운티의회는 서레이,워릭셔, 노팅엄셔 등과 같이 역사가 오랜된 비도시권의 농어촌 소규모 지역을 대표하는 경향이 있음
  - 카운티 의회는 주로 교통, 공공보건, 아동복지, 사회보장 등과 같이 정부 업무 분 계획을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담당함
- 디스트릭트 의회는 총 181개가 있고, 카운티의 권역 내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작은 구역을 대표하며, 대개 하나의 카운티 의회마다 5개~7개의 디스트릭트 단위 하위의회가 존재함
  - 디스트릭트 의회는 주로 주거, 도시계획 및 면허 등과 같이 좀 더 지역 내 장소와 관련된 정책서비스를 담당함

### 2) 1계층 의회

- 1계층 의회는 1개의 의회가 지역 내에서 지방정부의 전 기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서, 대도시 버로우 의회, 단일자치구 의회, 런던 버로우 의회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서 버로우는 자치구의 단위를 의미함
- 대도시 버로우 의회는 런던 바깥 지역에서 광역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의회를 의미함
  - 맨체스터, 머지사이드, 사우스요크셔, 웨스트 요크셔, 타인앤웨어, 웨스트 미들렌즈 등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총 36개의 대도시 버로우 의회가 존재함
  - 맨체스터나 뉴캐슬과 같은 큰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웨이크필드나

더들리 같이 일부는 서로 다른 농촌 지역들을 묶어서 함께 대표하는 경우도 있음

- 런던 버로우 의회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 내 존재하는 33개의 자치구 의회를 의미함
  - 참고로 런던시는 런던 지역 안에서도 역사적 특수성과 대표성으로 인하여 런던 버로우 의회 선거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단일 선거구로 분류되며, 잉글랜드 지역 안에서도 가장 작은 카운티에 해당함
- 마지막으로 59개의 단일 자치구 의회가 존재함
  - 이 단일 자치구 의회는 원래 2계층 의회의 형태였지만 단일화라 불리는 선거구 개혁 과정을 거쳐 현재의 통합된 자치구 의회의 형태로 변경된 경우라 할 수 있음
  - 개별 자치구 의회들이 대부분 1990년대와 2000년대 각 시점에서 일어난 지방정부 개혁의 산물들이고 단일 자치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지방의회 선거구의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하나로 유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콘월, 윌트셔, 더럼 카운티와 같이 큰 카운티 지역을 포괄하는 단일 자치구 의회가 있기도 하지만, 더비셔의 더비시의히나 랭커셔의 블랙폴의회와 같이 다른 행정구역들과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시의회도 있고, 과거에 버크셔 디스트릭트로 묶였던 지역이 워킹엄이나 슬로프와 같은 단일 자치구 6개 등으로 분할되어 각각의 단일 자치구 지방의회가 형성된 경우도 있음
  - 과거 하나의 카운티였던 체셔 지역이 둘로 분할되어서 이스트 체셔 의회와 체셔 웨스트 앤 체셔 의회로 각각 단일한 자치구가 형성된 경우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약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실리 제도의 경우와 같은 단일 자치구 의회도 있음
  - 실리 제도는 콘월 카운티와는 분리된 자치구이나 보건을 포함한 일부 정책서비스는 콘월 지역과 공유함
- 정리하면, 잉글랜드의 지방의회 유형은 <표 5-1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1계층 의회는 수도인 런던에는 런던 버로우 의회와 런던시의회를 합쳐서 33개의 의회가 있고, 대도시권에는 36개의 대도시 버로우의회가 존재하며, 대도시권 외부 지역에는 단일 자치구의회 58개와 실리제도 의회 1개가 있어 총 59개의 단일 자치구 의회가 존재함
  - 이는 카운티 선거구 내에 디스트릭트의 선거구가 포함되는 2계층 구조의 의회 형태와 구분됨



<표 5-11> 직할시 원주민구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유형	선거구 구분		계	
2계층 의회	비대도시권	카운티 의회	24	
		디스트릭트 의회	181	
1계층 의회	비대도시권	단일 자치구 의회	58	59
		실리 제도	1	
	대도시권	대도시 버로우 의회	36	
	런던	런던 버로우 의회	32	33
런던 시		1		
합계			333	

출처: <https://www.gov.uk/guidance/local-government-structure-and-elections>

### 3) 패리쉬 의회

- 영국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자리 잡은 소규모 형태의 기초 의회 단위로서 약 9,000여 개의 패리쉬 의회도 운영함
  - 패리쉬 의회는 디스트릭트 단위나 단일 자치구 단위보다 더 하위의 단위인 지역 주민들의 회의체이고, 타운 의회, 혹은 주민의회, 마을 의회라고도 불림
  - 경우에 따라서는 패리쉬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하는 반면에, 상기한 1계층 의회 혹은 2계층 의회를 주요의회로 구분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패리쉬 의회는 비도시 지역에서 인구 2,500명 이하의 지역을 대표하고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음
  - 패리쉬 의회 의원들도 선출되며 지역 내 공원, 공공건물, 공중화장실 및 놀이터 등과 같은 근린 시설을 운영할 권한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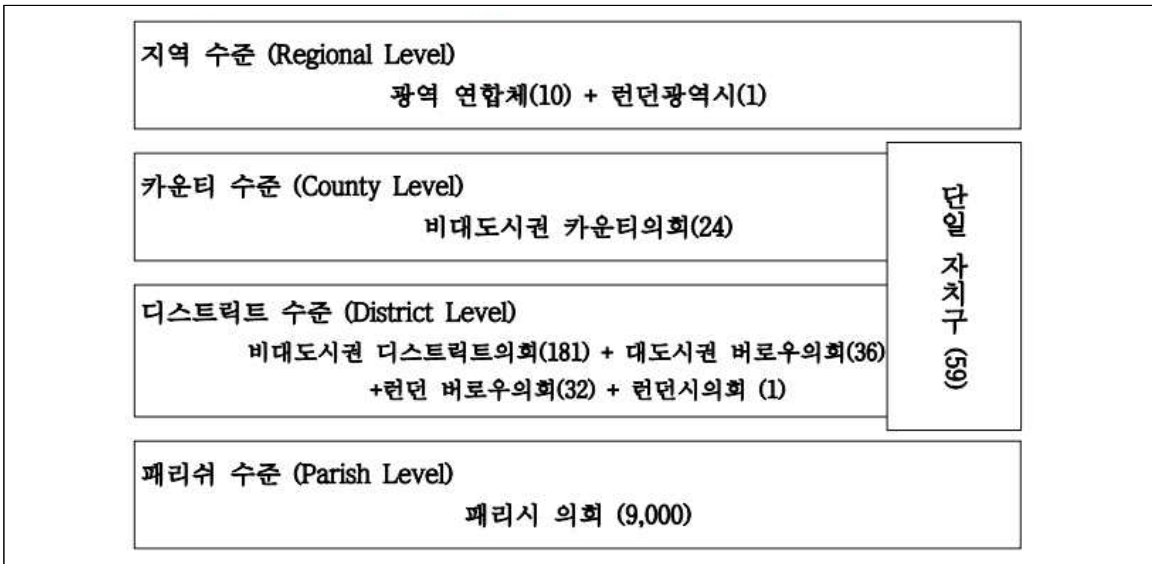
### 4)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회 구조

-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회 구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림 5-1>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잉글랜드 지역 지방의회 구조를 지리적인 포괄 범주에 따라 지역 수준, 카운티 수준, 디스트릭트 수준, 패리쉬 수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상위의 지역 수준에서는 10개의 광역 연합체와 1개의 런던광역시가 포함되며, 다음으로 카운티 수준에서는 비대도시권에 존재하는 24개의 카운티에 해당됨
  - 디스트릭트 수준의 경우 24개 카운티 의회 하위 범주로서 비대도시권의 181개의 디스트릭트 의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1계층 의회로 분류되는 대도시권 버로우 의회(36개), 런던 버로우 의회(32개) 및 런던 시의회(1개)가 디스트릭트 수준으로 포함됨
  - 단일 자치구 의회(59개)는 개별 지방의회마다 지리적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카운티-디

스트릭트 단위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의 지리적 단위로서 디스트릭트 의회 아래로 패리쉬 의회 약 9,000개가 존재함

[그림 5-1]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회 구조



출처: 한국정치학회(2021) p62

##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의 정수, 선거구 수, 선거구 경계 획정 등의 선거 제반에 관하여 지방선거구획정위원회(the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LGBCE)에서 결정함
- LGBCE의 검토 사항
  - 지방의회 총 정원 수
  - 지방의원 선출을 위한 목적의 선거구 숫자와 지리적 경계
  - 선거구역 당 선출되는 지방의원 숫자
  - 선거구역의 명칭
- LGBCE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조직으로서 “2009년의 지방자치, 경제발전 및 건설법”의 규정에 의해 잉글랜드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단위의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

### 1) 의원 정수 결정

- 지방선거에 관한 검토 작업에 있어서 LGBCE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회의 규모”, 즉



의원 총 정원 수를 확정하는 것임

-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법률로써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 몇 명 정도가 적절한 의회 규모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이 LGBCE에 있음
- 최종 결정권이 LGBCE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방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일반 원칙들이 전제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봄
- LGBCE는 의원 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네 가지 요소들을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삼고 있음(명성준 2019)
  - 지방의회의 거버넌스 구조
  - 지방의회의 조사 기능
  - 지방의원의 대표성
  - 지방의회의 향후 동향과 계획
-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LGBCE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LGBCE는 6단계(사전검토→의원정수 검토→선거구 획정 검토→초안 권고안→최종 권고안→영국의회의 검토)에 걸쳐서 선거 검토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 지자체 내 한 선거구의 유권자 숫자가 지자체 평균 유권자 숫자에 비해  $\pm 30\%$  수준으로 편차가 있을 때
  - 지자체 내 30%의 선거구들의 유권자 숫자가 지자체 평균 유권자 숫자에 비해  $\pm 10\%$  수준으로 편차가 있을 때
- 지방의원 정수 결정과 관련하여 LGBCE는 지방의원 정수에 관한 접근법을 소개하는 책자 Council Size Guidance: A guide to making a strong submission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음
  - LGBCE는 잉글랜드 전 지역에 걸쳐서 의회 규모(의원 정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인정하며, 잉글랜드 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의회 형태가 있을 뿐 아니라(대도시 의회, 단일 자치구 의회, 비대도시권 디스트릭트 의회, 카운티 의회, 런던 버로우 의회 등), 같은 지방자치단체 유형 안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
  - LGBCE,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리더십과 사회 서비스 및 대표성을 제공해야 함. 그래서 LGBCE는 의원 정수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에 적합한 선거 제도를 권고하고자 함
  - 최근 수십 년 동안 지방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상당히 변화해 왔으며, 2000년 「지방정부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방식을 변경했음. 또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2007년과 2011년에 후속법 제정으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

- 조에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침
- 많은 지자체가 수십 년 전 의회가 설립된 이래로 선출직 의원들의 숫자를 변경하지 않거나 약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LGBCE는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들이 재고할 것을 권고함
  - LGBCE는 현대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 서비스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지방선거의 의원 정수 문제를 검토함
  - 의원 정수에 대한 이의를 LGBCE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양식에 맞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LGBCE의 심의는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신청하기를 권함
  - LGBCE는 전략적 리더십, 책임성, 커뮤니티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원 정수의 적정성을 검토함
    - 전략적 리더십: 지방정부에 전략적 리더십과 방향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지방 의원이 필요한가?
    - 책임성: 지방정부를 조사하는데 몇 명의 지방의원이 필요한가? 지방정부의 규제요건을 충족하려면 몇 명의 지방의원이 필요한가? 지방정부와 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몇 명의 지방의원이 필요한가?
    -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 사회에서 지방의원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 특히 모든 검토작업에 있어서 LGBCE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 이후에도 효과적이고 편리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므로 지방의회 규모(의원정수)에 대하여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GBCE는 잉글랜드 각 지역 내에도 지방의회 간 규모면에서 상당한 다양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의원정수 산정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임
  - LGBCE의 의원 정수 간접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전략적 리더십·책임성·지역사회 리더십이라는 요건들을 중심으로 LGBCE가 검토함을 알 수 있음
  - 검토에 있어서 LGBCE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고, 이 과정에서 엄격한 수학적 기준이나 공식을 적용하지는 않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LGBCE에 선거 검토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 사회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의원 정수로 변경해야 그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
  - LGBCE는 선거 검토 과정에서 정책자문조직인 CIPFA(the Chartered Institute of Finance and Accountancy)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참조함



- 이 프로그램은 40여 개의 사회·경제지표 데이터와 수리통계적 기법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및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이며, LGBCE는 이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지방의원 대 선거인구 수 간의 적정비율을 파악하고 있음
- LGBCE는 지자체의 특수성과 요청을 존중하지만 전국적인 평균 지방의회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30명에서 최대 85명의 기준선 안에서 의원 정수를 산정하고자 노력함
- 지방의원 수 검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전에 초안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데 최종안에서는 오차범위 1명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LGBCE에 관한 최종 권고안은 명령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됨

## 2) 선거구 획정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선거 검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LGBCE는 선거구의 수, 선거구별 명칭, 선거구 간의 지리적 경계, 선거구 당 의원 숫자 등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안 초안을 작성함
- LGBCE가 2009년 ‘지방자치, 경제발전과 건설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서 고려하는 3가지의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동시에 3가지 기준이 달성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LGBCE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음
  1. 새로운 선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의원들과 거의 같은 수의 유권자를 대표하도록 해야 함
  2. 새로운 선거구는 가능한 한 공동체의 이익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 경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교통수단의 연결성, 지역 사회 조직들과 편의시설들, 자연적 혹은 물리적 경계, 패리쉬 구역 및 공유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
  3. 새로운 선거구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지방정부가 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선거구 획정에서 시의원 숫자, 지리적 규모, 선거구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세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한 선거구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될 수 있는 의원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선거구 당 대표의 숫자는 3명 이내로 결정함
- 2009년 지방자치, 경제발전과 건설에 관한 법에 따라서 4년 3회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정원을 3분의 1씩 개선하는 경우 LGBCE는 하나의 디스트릭트 구역 내 선거구를 모두 3명 선거구로 정하도록 해야 함
- 2년을 선거 주기로 지방의회 정원의 절반씩 교체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구역 내 선거구 당 대표의 숫자를 2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한 디스트릭트 구역 내의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하여 동등한 투표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임

〈표 5-12〉 선거 주기에 따른 선거구당 대표 숫자

선거 주기	선거구 당 대표 수	해당 지역
3분의 1	3명	일부 디스트릭트 의회 및 대도시 버로우 의회
2분의 1	2명	일부 디스트릭트 의회
전원 교체	1명~3명	카운티 의회, 런던 버로우 의회, 일부 디스트릭트 의회

출처: LGBCE (2021b)

- 그 밖에도 2009년 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선거구들은 모두 디스트릭트 구역의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선거구의 규모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확정되어야 함
- 도넛 형태의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북측과 남측이 연결되지 않아서 지리적 연계성 차원에서 좋지 않고, 북측과 남측 간의 정체성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권고하지 않는 사례임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표 5-13> 일본, 대만, 영국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 방식 비교

	일본	대만	영국
지자체 유형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	제도적으로 (1) 리더-내각형, (2) 시장-내각형, (3) 위원회형, (4) 기타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함 그러나 리더-내각형이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지방의회 구조	도도부현 의회 시구 의회 정촌 의회	직할시 의회(직할시 원주민구 민대표) 현시 의회 향진시 민대표 촌(지방의회 없음)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광역과 기초 기능이 통합된 단층 구조 지방의회 잉글랜드는 1개층 의회와 2개층 의회로 구분됨 그 외 페리쉬 의회, 지역연합체가 존재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	지역별로 다양함
의원정수	의원 정수는 인구에 비례하여 조례로 정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체로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현행 제도에서 상한 규정은 없으나 관습적으로 기존 지방자치법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규정	특별한 규정 없음 의회 의석 규모는 선거구 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LGBCE 재량으로 결정함 지방의회 거버넌스 구조, 지방의회 조사 기능, 지방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의 향후 계획 등을 핵심 기준으로 의원 정수를 검토함
선거구 확정	행정구획, 중의원 선거구,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 고려함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 곧 선거구 선거구를 분할하는 경우 행정구역, 인구분포, 지리적 환경, 교통여건, 역사적 기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원주민 선거구의 경우 행정구역 내에서 선거구를 별도로 분할함	선거구 간 인구편차 고려 다음의 경우 LGBCE의 선거 검토 사항이 됨 1) 지자체 내 한 선거구의 유권자 숫자가 지자체 평균 유권자 숫자에 비해 ±30% 수준으로 편차가 있을 때 2) 지자체 내 30%의 선거구들의 유권자 숫자가 지자체 평균 유권자 숫자에 비해 ±10% 수준으로 편차가 있을 때 가능한 한 공동체의 이익과 정체성을 반영 지리적 경계를 식별 가능 교통수단의 연결성, 지역사회, 편의 시설들, 물리적 경계 및 기초의회 구역 등을 고려함

출처: 한국정치학회(2021) p70-p72

# 제6장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 제1절 개선방안<sup>32)</sup>

### 1.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

#### 1) 개요

- 국회의원 정수 관련 연구들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정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편이며, 지방의회 획정 관련 연구는 활발한 편이지만 지방의회 정수 및 기준에 관한 연구는 미진함
- 이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의 중요성은 보편적인 반면 인구라는 절대적 변수의 다른 어떤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며, 특히 지방의회 관련된 연구는 국가별로 달리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역사적 맥락, 민족·인종과 같은 특수성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
- 국회의원은 지역적 대표라는 의무와 함께 국가 전반적 이익 및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방의원은 지역 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활동은 전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정수 결정은 국회의원 정수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논의라 할 수 있음
- 지방의원 정수 결정에 있어 인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으나, 이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를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있는지 봐야 함
  -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임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행정부와 유사하게 기능적으로 분화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배정된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정부 구조가 단체장-의회 대립형인지 아니면 통합형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대립형인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및 자원을 갖추어야 함
- 「대한민국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보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

32)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결과 인용



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 속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전문성과 분업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점에서 위원회 특히 상임위원회는 중요할 수 밖에 없음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임

## 2) 의원정수 결정

- 지방의회 정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가 없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외국사례와 의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 기능을 위해서는 몇 명의 의원이 필요한지 유추하는 것임
- 한국정치학회(2021)에서 7명 의원으로 구성된 2개의 의회, 11명, 13명, 15명 의원으로 구성된 3개 의회를 비교한 결과 7명 의원 의회는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결과를 얻었음
  - 기초단위 지방의회는 적어도 3개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함. 상응하는 행정부의 조직도를 보았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외에 3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해서 3개 상임위원회는 필수임
  - 3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11명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음
  -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23조제2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표 6-1>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11인으로 한다.
- 한국정치학회(2021)는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인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면서 논리적인 구조에서 최소정수가 산정되어야 하며, 인구 규모와 함께 의회 기능, 현재 시장-의회 대립형인 지방정부 구조를 고려하여 최소 정수를 산정한 결과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최소 11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 인구 규모에 따른 의원 정수

- 적절한 의원 정수 산출에서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활용하여 적정 규모를 제시한 Taagepera와 Shugart의 공식(Rein Taagepera & Matthew Shugart, 1989)
  - 타게페라와 슈가트는 미국 하원 및 여러 국가의 의원 정수를 검토, “의원 정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 는 공식( $S = \sqrt[3]{P}$  : S는 의회의석규모, P는 인구)을 제시
  - 이들의 연구는 국가 간 비교이며, 인구에 의한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인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게 함
- 한국정치학회(2021)의 타게페라와 슈가트 공식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7석 의회에 상응하는 의원정수는 각각 21명, 25명, 27명으로 차이가 있었음
  - 현재 의석과 공식에 의한 의원정수 간에는 적게는 2.3배(경남 창원시) 크게는 5.71배(경기도 시흥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의 의원 수보다 적어도 2배의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인구만이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며, 인구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고, 광역시와 광역도와는 의석 수 산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
  -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안산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기초의원 의석수는 각각 21, 25, 34, 26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음
  - 가장 의원이 많은 기초의회는 경남 창원시의회로 44명의 의원이 있는 반면에 경남 창원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의회의 의원은 경남 창원시에 비해 적음



## 제2절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 1. 오산시의회 기능적 측면에 따른 의원 정수

-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6-2>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존속한다.

-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고,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만 있음
- 오산시의회는 유급제 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의회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립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회임에도 상임위원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오산시 행정기구는 2024년 기준 5국, 3관, 24과, 1의회, 1직속기관, 3사업소, 8동 159팀이며, 공무원 정원은 850명임
- 오산시 보다 행정기구(1실, 3국, 16과, 1의회, 1소)와 공무원 정원(506명)이 적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2개 있음
- 오산시 보다 행정기구(5국, 1실, 6관, 33과, 1의회, 1소, 1센터, 2본부, 7사업소) 규모가 약간 큰 경주시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 있고, 의원 정수는 21명임
- 한국정치학회(2021)는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에서의 의원 정수는 최소 11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오산시의회의 기능적 측면을 타 시도의회 등과 비교분석하면 최소 2개 이상의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의원 정수는 최소 18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임

&lt;표 6-3&gt; 타 시도의회 규모

자치구·시·군명	행정기구	공무원 수	면적(km <sup>2</sup> )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
동두천시	3국, 2담당관, 20과, 1의회, 1직속(2과), 3사업소	711	95.66	-	7
부산광역시 중구	1실, 3국, 16과, 1의회, 1소	467	2.82	운영자치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7
웅진군	3국, 2실, 15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	662	172.94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7
여수시	7국(43관·과), 의회사무국(1국, 3전문), 2직속기관(8과), 사업소(2단, 6과), 1출장소	1,936	512.3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26
경주시	5국, 1실, 6관, 33과, 1의회, 1소, 1센터, 2본부, 7사업소	1,742	1,324.86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21
강릉시	5국, 1단, 2관, 2직속기관, 3사업소	1,519	1,040.83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19
광주시	6국, 3담당관, 34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367	430.99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11
하남시	6국, 1단, 3담당관, 28과, 1의회(국), 1직속(2과, 1지소), 2소(6과)	1,097	93.04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0
의왕시	4국, 3담당관, 27과, 1의회(과), 1직속(2과, 10팀), 1소(3과)	769	54.03	-	7
군포시	5국, 3실, 27과, 1의회(과), 2소(4과, 1지소)	1,050	36.4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9

## 2. 오산시 인구 규모에 따른 의원 정수

- 오산시 인구는 232,965명이며, 의원 정수는 7명임
- 타 자치구·시·군의 인구 규모와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음
  - 동두천시 인구는 87,725명이며, 의원 정수는 7명임
  -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는 40,805명이며, 의원 정수는 7명임
  - 웅진군 인구는 20,212명이며, 의원 정수는 7명임
  - 여수시 인구는 278,101명이며, 의원 정수는 26명임
  - 경주시 인구는 246,081명이며, 의원 정수는 21명임
  - 강릉시 인구는 209,439명이며, 의원 정수는 19명임
  - 광주시 인구는 407,192명이며, 의원 정수는 11명임
  - 하남시 인구는 330,003명이며, 의원 정수는 10명임
  - 의왕시 인구는 155,593명이며, 의원 정수는 7명임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 군포시 인구는 258,991명이며, 의원 정수는 9명임
- 오산시 인구나 비슷한 규모인 여수시, 경주시, 강릉시, 군포시의 의원 정수는 각각 26명, 21명, 19명, 9명으로 따라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도 최소 9명 이상은 되어야 함
- 적절한 의원 정수 산출에서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활용하여 적정 규모를 제시한 Taagepera와 Shugart의 공식에 따른 적정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61.5명 임
- Taagepera와 Shugart의 공식에 따른 타 자치구·시·군의 적정 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음
  - 동두천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44.4명임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34.4명임
  - 용진군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27.4명임
  - 여수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65.2명임
  - 경주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62.7명임
  - 강릉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59.4명임
  - 광주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74.1명임
  - 하남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69.1명임
  - 의왕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53.8명임
  - 군포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는 63.7명임

<표 6-4> 타 시도의회 인구 규모 등에 따른 의원 정수

자치구·시·군명	인구 수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	타게페라와 슈가트 공식에 따른 의원정수
동두천시	87,725	-	7	44.4
부산광역시 중구	40,805	운영자치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7	34.4
용진군	20,212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7	27.4
여수시	278,101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26	65.2
경주시	246,081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21	62.7
강릉시	209,439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19	59.4
광주시	407,19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11	74.1
하남시	330,003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0	69.1
의왕시	155,593	-	7	53.8
군포시	258,991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9	63.7

## 제3절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 방안

### 1. 선거구 획정 절차에 따른 건의 방안

#### 1) 「공직선거법」 개정

-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 이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최소 정수 7인은 30년 동안 변함이 없음
  - 「공직선거법」 제23조제2항 “자치구·시·군의회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는 규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야 함
-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의 면담 등을 추진해야 함
- 「공직선거법」 개정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결 후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건의되도록 추진해야 함

#### 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

-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의회 의견 수렴 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별표(시군별 정수, 지역구) 개정을 추진해야 함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해야 함

### 2.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안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오산시는 1451년 개찬된 고려사에서 등장할 만큼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이며, 철도·고속도로·국도가 관통하는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1995년 6만 7천여명이었던 오산시 인구는 현재 23만 3천여명으로 거의 4배나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에 따라 오산시 사무와 예산 또한 증가하였으며, 1989년 오산시 출범 당시 6개동이었던 행정구역은 8개동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구성 또한 인구 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타 시·군·구와 달리 선거인수가 전체 인구의 83.03%를 차지하는 등 18세 이상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하지만, 오산시의회는 의원 정수 부족으로 증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이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출범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7명이었으며, 당시보다 인구 수가 거의 4배 증가하였음에도 의원 정수 7명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현행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상황이며,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타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의원 정수가 최대 거의 4배나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한 상황에서 오산시의회만 의원 정수의 부족으로 증가한 인구·사무·예산 등에 대한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및 주민의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급기야 2023년에는 동료의원을 잃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행 법체계에 맞게 증가한 오산시 인구 규모를 반영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타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시켜줄 것을 국회 및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오산시 인구 규모에 맞는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정개특위에서 오산시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의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산시의회가 의원 정수에 있어 차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오산시의회의 의원 정수 부족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오산시의회와 함께 국회 및 정부에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건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00월 00일  
오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제7장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안)

## 1. 조직개편안: 사무기구

### 1) 기능배분안

#### ■ 입법, 홍보지원 기능 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22.1.13.)에 따라, 입법지원 및 홍보 기능을 확대
  - 현재의 전문위원실 운영을 유지하되, 입법정책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을 소속하게 하고, 홍보팀의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원 3명 및 예산정책 관련 인력 1명과 부서관리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교육·훈련 기능 강화
  -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력관리(경력관리)기능은 채용뿐만이 아니라 복무, 퇴직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기능을 의미하는 바, 이와 관련한 기능 강화가 요구됨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도 개정되어 의회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의원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강화가 필요함

#### ■ 의회운영조직과 의정지원조직의 구분

- 의회운영조직으로 의정팀, 의사팀을 설치하고, 의정지원조직으로 홍보팀 및 입법정책팀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함
- 현재의 전문위원실은 기능은 현행유지하되, 향후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라 인력의 증감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조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검토함
  - 전문위원의 직급이 5급 상당으로 의회사무과장(5급)과 직급이 맞지 않는 한계가 있는 바, 의회사무국(4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직급 및 인력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전문위원실의 기능도 확대하여 의안에 대한 검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현재 총 정원 23명에서 입법정책팀 신설을 위해 팀장(6급) 1명 및 직원(7급) 1명 증원하여 총 정원 25명으로 구성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그림 7-1] 조직개편(안) 사무과장 (1), 전문위원(2), 의정팀(8), 의사팀(5), 홍보팀(5), 입법정책팀(5)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사무과 3팀 1전문위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 의사, 홍보, 전문위원실</li> </ul> </li> </ul>
검토 요건	기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임·위탁 대상 기능 없음</li> </ul> </li> <li>기능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 간 연계성 높음</li> </ul> </li> <li>기능수요 변화(신규기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시행(2022.1.13.) (의회소관부서로 전환)</li> <li>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배분, 기능배분 등으로 총무기능 수행부서 수요 증가</li> <li>인건비 관리 등 재무관리 기능 수요 증가</li> <li>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인사관리 기능 확대</li> </ul> </li> </ul>
	한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li> </ul>
	비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두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사무과 4팀(+전문위원): 의정, 의사, 의회홍보, 입법정책, 전문위원</li> <li>의정팀: 문서, 보안, 관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의전, 대회협력 등</li> <li>의사팀: 본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조정 등, 위원회 의사진행 등</li> <li>의회홍보팀: 언론홍보,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등 제작 등</li> <li>입법정책팀: 의원연구단체 관리, 의원정책 개발지원 등</li> </ul> </li> <li>인천광역시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사무국 3팀(+전문위원): 의정, 의사, 정책 지원, 전문위원</li> <li>의정팀: 문서, 보안, 관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의전, 대회협력 등</li> <li>의사팀: 본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조정 등, 위원회 의사진행 등</li> <li>정책지원팀: 의원연구단체운영 지원, 정책지원관 관리</li> </ul> </li> </ul>
개편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훈련 및 인사 기능 강화</li> <li>입법정책팀 신설(정책지원관 중심 운영)</li> <li>전문위원실 인력 증가(상임위원회별 배치)</li> </ul> </li> </ul>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사무과 4팀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팀, 의사팀, 입법정책팀, 전문위원실</li> </ul> </li> </ul>

## 2) 인력배분안

### ■ 조직개편안에 따른 오산시의회사무기구의 인력규모는 총 25명(의회사무과장 1명 포함)임

○ 현재 정원(23명: 의회사무과장 1명 포함)에서 2명 증원하여 1팀 신설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의 확대됨에 따라, 부서별 인력감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인력대비, 업무 조정 및 팀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2명 증원(6급, 7급)
- 신규기능으로써 예산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과, 정책지원관 인력을 반영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인사관리 및 인건비 예산 등의 기능을 소관하는 의정팀의 인력은 의회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함
  - 언론홍보, SNS 등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함
  - 정책지원관 3명을 신설되는 입법정책팀 소속으로 재배치하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함

〈표 7-1〉 오산시의회사무기구 인력배분 대안

팀	정원	증감	조정안	비고
전체	23	0	25	
의회사무과장	1	0	1	• 사무과장
의정팀	8	0	8	• 인사·교육훈련 등 의회행정에 집중
의사팀	5	0	5	• 회의진행 및 의사운영에 집중
의회홍보팀	5	0	5	•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
입법정책팀	0	+5	5	• 신규 기능 및 기능 확대에 따른 팀 신설 • 입법지원, 의원연구단체, 입법·법률 고문 운영 등 • 팀장 1명(직급 신설), 정책지원관 3명, 일반직 1명
전문위원실	5	-3	2	• 위원회 운영 및 심사 기능

## 2. 조직개편안: 상임위

### ■ 위원회 제도

-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안건을 사전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 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안전심사의 “예비심사기관의 역할” 을 하는데 이 경우 본회의는 최종 결정기관 역할을 함

### ■ 상임위 신설 검토배경

- 시대의 변화로 고도화, 전문화되는 다양한 시민의 행정수요 발생
- 시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정활동 필요

### ■ 특별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시민의 요구사항과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어 적극적인 대응 곤란
- 행정부 부서에 대한 소관이 없어 소관별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예비심사기능이 미흡

### ■ 상임위원회 신설(안)

-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77개(78%)가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49개(22%)에서 미설치 중임
- 7인 의원 의회 55개 중 20개(36%) 설치하였고, 36개(64%)가 미설치 중임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및 인력 현황, 오산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3개 상임위 신설을 제안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임
  - 자치복지위원회 소관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임
  -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중앙도서관 임
  - 전문위원이 2명임으로 1명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이 경제도시위원회를 담당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위원 1명 증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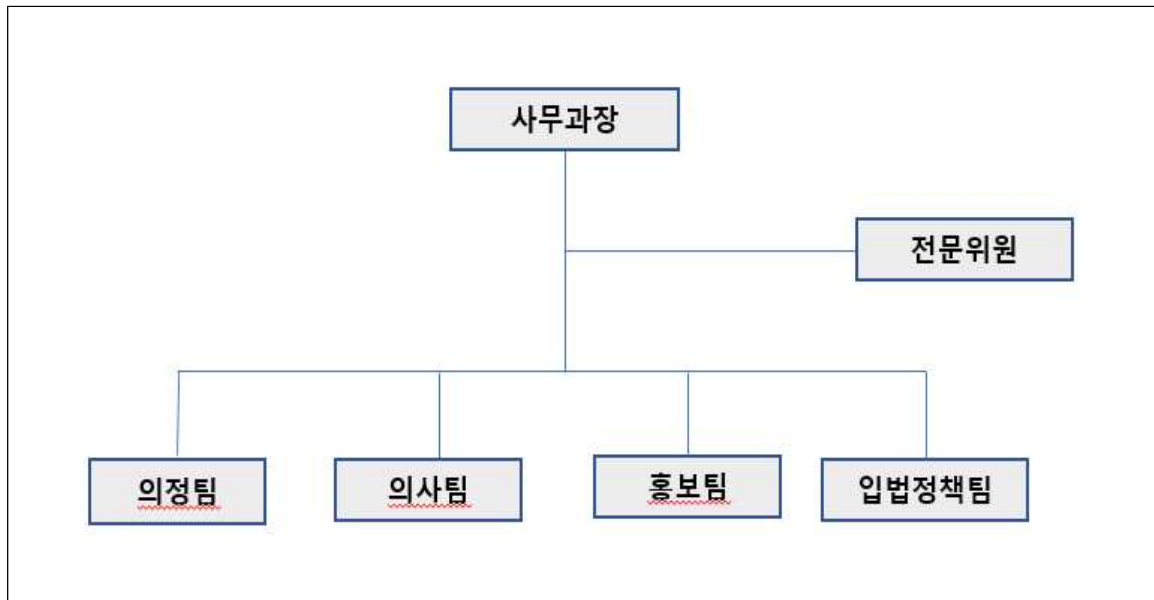
## 3. 조직개편안: 중·장기개편안

### ■ 오산시의회사무과의 이상적인 조직구성형태로 장기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함

-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임과 동시에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지방의회사무기구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없음
  -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각 부서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바, 감독 대상이 됨

- 이와 다르게, 의회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관위임사무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무가 없는 바, 상위 기구와 동일한 행정기구설치의 규모와 인력배분 규모가 요구됨
  - 특히, 입법지원기능의 경우, 기초의회의 입법지원사무는 상위법령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해야 하는 바, 상위법령만 검토해도 되는 광역의회의 입법지원기능 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기구로서의 최대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배분 및 기구개편대안을 제시함

[그림 7-2] 조직개편안: 조직도



## 4. 지방의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 1) 지방의회 지원의 의의

#### ■ 지방의회 운영환경의 변화

-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으며,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2022년 7. 1. 제9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음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지방을 운영하는 중요한 양대 축 중의 하나이며,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핵심적 주체이고 기관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예산·결산의 심의 및 심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기도 함



- 청원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도 함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우리의 지방자치 성과를 결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보증하는 기제라 할 수 있음
-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후,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의회는 적지 않은 활동을 해왔음
-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방의 각종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집행기관의 감시와 통제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편임
  - 많은 안건을 처리했지만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것이라는 점,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출신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운 점, 소수이긴 하나 일부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의 노출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음<sup>33)</sup>
- 이러한 측면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집단들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며, 1995년 지방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집행기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보통 57.3%, 만족 7.9%, 불만족 32.7%로 의정활동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임
  - 지역주민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59.3%, 불만족이라는 응답자가 39.6%에 달하여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sup>34)</sup>
- 지방자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출범된 지방의회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잘 갖추고 활동했을 때, 지방의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역량제고는 지방의회의 각종 의정활동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초 활동이며, 이러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역량제고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마련도 필요임

## 2) 지방의회 지원의 논리

33)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전문성의 취약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영향변수의 하나라는 점은 기존연구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음(박종득 외, 2001; 최근열 외, 2000).

29) 지방의회활동의 긍정적 측면은 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자율권 신장, 주민참여기회 확대, 지역특성 및 잠재력 개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대 정부활동의 활발한 전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민생 및 지역사회 당면과제 해결노력 등임. 지방의회활동의 부정적 측면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의정활동경험부족에 따른 의회운영 차질,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 일부 의원들의 부조리,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민원처리 등임(지방의회백서, 1996).

## ■ 지방의회 지원의 의미

-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몇몇 지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제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지원하는 제도들임<sup>35)</sup>
  - 의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설치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의한 지원제도임
  - 둘째, 전문적 지식의 지원체제임
  - 의원들의 해당지역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제도 등임
- 지방의회 사무조직은 지방의회 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시·도와 시·군·구 기구의 명칭이 약간씩 다름
  -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로써 지방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임
  - 지방의회 사무조직은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전문위원제도는 지방의원들이 의안심의·처리 등의 입법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지원제도임
  - 지방의원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지방의원들은 실생활에서 생계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의원들은 제한된 시간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등의 제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집행기관은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아 직접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음
  - 주민의 대표 합의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입법기능, 의결기능, 행정에

35) 지방의회 사무기구(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 기능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이며, 지방의회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존재 의미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체제로서 사무기구라는 조직과 관계된 인력(직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집행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제도 및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경찰업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율성 확대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지원 기능의 확대·강화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 전문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지원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필요성

-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필요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의회의 많은 정책기능에 대한 대응력 제고의 필요성임
  - 해당 지역의 조례제정, 개정, 예산과 결산 승인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정책집행을 감시 및 비판함으로써 집행부의 통치권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점점 더 복잡다기해지는 현대사회의 지역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sup>36)</sup>
  - 지방의원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만 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분야의 업무만을 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해야 하는 신분임
  - 지방의원은 자기의 전문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의 필요한 도움이 있어야만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정이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임
- 둘째, 현대 사회의 지역 정책기능의 전문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의 필요성임
  - 지방의원이 처리해야 하는 지역 조례의 제·개정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 및 감시활동에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임
  - 지방정부의 조례안의 발의활동은 단체장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아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회는 오히려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정을 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단체장 주도의 입법 활동을 견제하려는 데 초점을 둔 제한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36) 현대의 지방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음(Buchanan, et.al.,1960).

- 지방의회는 기능도 적고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 수도 적은 데서 기인하기는 하지만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잘 정비된다면 의원들의 전문 분야의 대응능력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봄
- 셋째, 지방의회 인력운영의 독립성 확립의 필요성임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직무감독권을 부여하면서도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은 상호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비롯한 인사발령권 등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하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권한이 의회사무기구의 보좌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지방의원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명령통일의 원칙이나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관리의 원칙이 인사권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문영역의 정책보좌기능 보장 필요성임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사무처(사무국, 사무과)는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일반관리직 중에서도 총무와 내부인사업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위한 자료담당의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미미한 실정임
  - 전문위원이나 보좌관제의 필요성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원 보좌관은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 됨
  - 전문위원과 의안담당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특화된 전문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됨
  - 각종 법률, 조례, 규칙, 행정사례, 선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분석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사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 분석할 역량도 보유하여 의장과 의원을 잘 보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의회 및 의원들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전문직의 지원이나 전문보좌관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다섯째, 소의회제에 적합한 제도운영의 필요성임
  -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더 많은 프랑스의 지방의원 수는 50만 명이 넘어 우리나라 지방의원 총수의 138배에 이르고, 영국은 10배 이상 많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지방의원 1명이 하는 일을 프랑스에서는 120명이 하고, 영국에서는 10명이 더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 외국보다 적은 수의 의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의회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임
- 우리나라는 소의회제를 채택·운영하는 체제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적절한 지방의회 지원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여섯째,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임

- 지방의회의 역량은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조직이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나 미래의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출해내는 제반 보유능력임
- 지방의원의 역량은 우선, 역할기능 부문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입법을 비롯한 최종적 의결기능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정치적으로 체제유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함
- 지위·권한 측면에서 의결권, 행정감시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등을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역량을 잘 발휘하려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제도가 잘 구비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사무기구의 기능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을 분류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구성차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조직유지 차원의 의회자체 관리유지를 위한 기능임
  - 조직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포함하며, 회계·경리, 건물·시설물 관리, 문서처리, 인쇄작업, 우편물발송, 인사관리, 사무실배정 등이 해당됨
- 둘째, 의회운영의 차원의 의회 특정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임
  - 위원회의 회의장 준비·관리, 의사진행, 입법지원체제의 운영, 전문위원 운영, 보좌관계의 운영 등이 속함
- 셋째, 기능차원에서 의회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일체의 필요한 업무들임
  - 예산심의, 청문회 개최, 정책사업평가,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됨

3) 지방의회 지원체계의 일반적인 문제점

■ 첫째, 조직의 자율권이 취약함

- 법령의 기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와 인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서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sup>37)</sup>, 제2항에 의해 시·도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회사무국·의회사무과는 이러한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sup>38)</sup>
-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복잡해질수록 의회사무기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사무조직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정된 인사 관련 제도로도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 주민의사 수렴활동, 대화와 협상활동 등의 전반적인 정책활동 능력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총체적인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조직의 자율성 제고,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 등이 매우 중요함

## ■ 둘째, 정책조사·연구기능이 취약함

- 현재 지방의회 정책조사연구기능에 관하여 사무기구의 분장사무규정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의정팀과 의사팀의 사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조사연구 실적이 거의 없는 등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전문위원은 너무 다양하고 많은 업무가 부과되고 인력도 제한되어 전문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음
  - 전문위원과 관련된 업무는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전문위원의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

37)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과 그 출장소



고, 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위원회 의사진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준비, 소관 위원회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 셋째, 의정보좌기구가 취약함

- 현재 전문위원은 법적으로는 의안심사와 회의진행을 담당하며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음
  - 전문위원은 집행기관 실무부서의 장보다 그 직급이 낮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지방의회의 정책연구기능이라고는 의회의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밖에 없음.

### ■ 넷째, 직원 전문교육기능의 부재문제임

- 의회사무 중에서 일반 관리사무는 집행기관과 비슷하지만, 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나 연구조사에 관련된 사무는 집행기관의 사무와는 달라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함
  - 의회사무기구는 각종 안전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보조 및 의회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초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직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는 거의 없는 바,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훈련이 필요함

### ■ 다섯째, 부서간 기능분담이 불명확 함

- 현재의 의회사무과 직원은 주로 의회행정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정보좌와 관련된 업무는 집행기관과 위원 간의 자료전달, 안전검토, 기 집행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의 소극적인 보좌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의회사무기구임
  -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본이나 국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대부분의 의회가 취하는 정책이 행정부서보다 전문위원실을 보장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이 새로운 업무개발 없이 기존의 행태와 같이 회의진행보좌, 현지 확인 수행 등과 같은 행정, 연락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 또한 실익이 없음<sup>39)</sup>

39) 다만,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사제도의 개선으로 일반직보다는 전임계약직 등으로 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음. 즉, 제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미약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집행하기 위한 의회의 자치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러한

#### 4)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활성화 방안

##### ■ 첫째, 사무기구 등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지방의회의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
- 각 지방의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운영권을 대폭 허용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 의회사무기구는 부족한 의원의 전문성을 보좌하는 기능이 주가 되어야 하나 현재의 의정지원 기능은 주로 사무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고, 사무직원으로부터 양질의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

##### ■ 둘째,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을 부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요구와 능력에 알맞게 짜여지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구를 일률적으로 구성했는지라도 자치 실시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정 기구의 요구를 새롭게 측정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의 규정<sup>40)</sup>에 의해 이러한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조차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조직권을 제약하는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음

##### ■ 셋째, 입법조사관 제도 신설이 필요함

- 사무과의 올바른 기능은 의회의 정책결정능력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
  - 입법정보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의회가 입법정보의 수집을 로비스트나 행정부에 의존하였으나 의회의 행정부 종속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생기자 의회의 독립된 정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sup>41)</sup>
  - 의회의 입법보좌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은 지방정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사무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이유로 인해 주민과 공무원을 통한 인식조사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매우 낮게 평가되기도 하였음.(송광태, 2003)

40)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제10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41)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결정 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문보좌관의 규모가 보좌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음.



- 의회사무처 입법조사관(광역의회의 경우)이 의회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직무가 다른 점과 전문적인 역량발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조사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넷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문기구의 구성과 활용

-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책입안활동과 활발한 심의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sup>42)</sup>
  - 자문위원회에는 지방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의회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전직 지방의회 사무처나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 다섯째, 집행기관과의 권한배분관계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 양 기관의 권한 배분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은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대법원에의 제소권, 집행정지결정신청권, 선결처분권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등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2) 지방자치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에도 집행부 최고의 관료가 법률전문가였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법원이나 시법무관 등의 제도를 둬으로써 지방의회의 법률적 문제에 대처하고 지방의원들의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는 실정임(최덕규, 2002).

## 제8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의원 정수 확대

#### ■ 선거구 획정

- 제정 지방자치법과 그 이후 개정내용에 나타난 지방의원 정수 산정기준의 특징은 인구가 일차적인 기준이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 인구나 증가폭을 차별적으로 설정하였음
-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함
-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헌법재판소 판례(2010헌마401)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 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결하여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대표성이 중요함을 결정요지로 하였음
- 일본, 대만, 영국 등의 해외사례에서도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정수를 결정하였고, 추가로 지방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의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정수를 검토함

#### ■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

- 한국정치학회(2021)는 현재 기초의회 최소정수인 7명의 적절성에 관해 지방의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현행 7명의 최소정수보다 4명이 더 많은 11명이 최소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적정한 의원 정수 산출에서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소를 활용하여 적정 규모를 제시한 Taagepera와 Shugart의 공식에 따른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정수는 61.5명 임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규모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에서 타 시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교분석하였을 때, 오산시의회 최소 의원 정수는 18명 임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른 타 지방의회와의 의원 정수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오산시의회 최소 의원 정수는 9명 임
- 선행연구, Taagepera와 Shugart의 공식,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 및 인구 규모에 따른 타 시도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를 산출하면, 최소 9명에서 최대 18명 임



## ■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로드맵

### ○ 관련 법령 개정 촉구

- 「공직선거법」 제23조 등의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건의 및 면담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등의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과의 면담 및 건의자료 전달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건의 및 면담
-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오산시의회에서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송부
- 인구규모 등이 비슷한 타 시도의회와의 의원 정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 청구기간 등에 문제가 있지만 헌법소원 추진

### ○ 협력 네트워크 구성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전체의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시민단체 연대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대시민 홍보

### ○ 사회공감대 형성

- 시민홍보활동을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가 오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홍보하여 우호적 분위기 형성
- 대언론홍보 강화를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우호적 여론 조성

## 제2절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 방안

### 1. 장기적 개선안

#### ■ 정원 및 예산 확충을 통한 기능별 확대

##### ○ 기능배분

- 입법지원기능 강화 : 입법지원 전문 부서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법령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조례, 국가 법령 등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임.
- 지방자치단체 현안대응 : 기초의회는 특히 지역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사무국에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부서) 기능이 필요

- 기구개편대안
  - 전문 부서 신설 : 입법지원 및 현안대응을 위한 전문 부서를 신설하여 역량을 강화.
  - 정보 및 리서치팀 강화 : 입법과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를 담당하는 팀을 강화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
  - 협의 및 공청회 강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 및 공청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도입.
- 상호협력 강화:
  -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입법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지방의회 구성원 간의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문성 향상과 협업 강화를 촉진.

## 2. 과도기적 개선안

### ■ 현 정원내 기능별 재배치

- 입법지원기능 확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회 권한을 바탕으로 전문성 강화로서 입법지원기능 확대
- 전문위원실 운영 개편:
  - 상임위원회별 인력과 업무를 재배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심사 기능 강화
- 신규 부서 설립
  - 입법지원기능 강화 부서 신설 : 입법정책팀을 신설하여 정책지원관 등을 배치하고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이를 위해 팀장 1명, 직원 1명 증원)
  - 의정팀의 기능 재정의 : 의정팀은 인사관리를 포함한 총무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지
- 계선조직 설치
  -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을 계선조직으로 구성.
- 인력 및 예산 조정:
  - 인력 증원: 현재의 23명에서 2명 증원하여 신규 기능 수행.
  - 입법정책팀 신설로 의회전문성 확보, 입법 및 의원지원 기능 집중
  - 기존 의정팀 인력 유지: 인사관리 및 총무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8명의 의정팀 인력을 유지



- 의사팀은 회의진행 및 의사운영에, 의회홍보팀은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집중하여 전문성 강화
- 과도기적 조직개편으로 입법지원 기능의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함

### 3. 제도 개선과 의정지원의 방향성 확보

- 조직개편안은 조직구성권이 의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및 집행부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 단기적인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임
-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며 그 중추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 전문성 강화와 의정지원 활동의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추후 각 분야별 세부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활동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안 수정이 필요할 것임.

### 4. 상임위원회 신설(안)

- 현대 사회의 문제가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회 활동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대부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의회 지원기구의 확대와 보좌 인력의 전문화 또한 중요함
- 또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신설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및 인력 현황, 오산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3개 상임위 신설을 제안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임
  - 자치복지위원회 소관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임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은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중앙도서관 임
  - 전문위원이 2명임으로 1명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이 경제도시위원회를 담당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위원 1명 증원이 필요

[참고] 자치단체별 인구, 의회조직 현황(23.11 기준)

구분	자치단체 (인구수)	의원수	위원회 수	본청 공무원 수	의회 공무원 수	의회 부서 수	의회부서 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139,606명)	11	3	1,292	32	3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중구 (121,300명)	9	3	1,231	25	5	의정팀 / 시책사업추진반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실
	용산구 (215,397명)	13	3	1,318	32	4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성동구 (278,035명)	14	3	1,322	28	4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광진구 (336,294명)	14	3	1,422	35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강북구 (289,372명)	14	3	1,354	41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도봉구 (307,470명)	14	3	1,319	38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의정홍보팀 / 정책지원팀
	서대문구 (306,927명)	15	3	1,374	44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금천구 (228,274명)	10	3	1,162	33	4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의회홍보팀
	영등포구 (375,276명)	17	3	1,456	40	5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부산광역시	중구 (38,831명)	7	2	518	14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서구 (104,268명)	7	2	637	13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동구 (88,008명)	7	2	647	16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영도구 (106,816명)	7	2	659	15	1	사무과(의사팀 / 전문위원)
	동래구 (271,670명)	14	3	804	22	1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계 / 의사계)
	남구 (254,455명)	13	3	715	28	4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정책지원팀)
	북구 (274,481명)	14	3	1,152	24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금정구 (216,770명)	12	3	834	20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강서구 (142,777명)	7	0	680	17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연제구 (203,004명)	11	3	745	15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계 / 의사계)
	수영구 (174,994명)	9	2	660	17	1	사무과(의사계 / 전문위원)
사상구	11	3	772	18	3	사무국(의정팀 / 의사팀 / 전문위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203,445명)						원)
	기장군 (179,084명)	9	3	840	21	3	사무과(의정팀 / 의사팀 / 정책지원팀)
대구광역시	중구 (87,387명)	7	2	638	18	2	의정 / 의사
	서구 (161,149명)	10	3	771	24	3	의정 / 의사 / 정책
	남구 (140,132명)	8	3	715	10	1	의정
	달성군 (262,525명)	12	0	1,011	20	3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인천광역시	중구 (158,181명)	7	2	938	20	3	의정 / 의사 / 전문위원
	동구 (59,806명)	8	2	718	25	3	의정 / 의사 / 정책지원
	미추홀구 (405,499명)	15	3	1,199	29	5	사무국(전문위원 / 총무팀 / 의사운영팀 / 정책지원팀 / 의정지원팀)
	연수구 (390,896명)	13	3	996	26	4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가록팀 / 기획홍보팀)
	계양구 (282,158명)	10	3	963	25	4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정책홍보팀)
	강화군 (69,137명)	7	2	785	20	2	의정 / 의사
	옹진군 (20,452명)	7	3	631	18	2	의회행정 / 의사지원
	대진광역시	동구 (106,957명)	7	3	739	25	4
서구 (284,870명)	13	4	1,159	39	6	전문위원,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동구 (218,465명)	10	3	882	33	4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중구 (224,143명)	11	3	849	28	6	전문위원, 의정팀, 의정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속기팀	
유성구 (365,082명)	14	3	910	33	5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홍보팀, 운영지원팀, 청책지원팀	
대덕구 (170,297명)	8	3	791	22	2	의정 / 의사홍보	
예산광역시	중구 (207,179명)	10	3	684	23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계, 의사계, 의정홍보계)
	남구 (308,438명)	14	3	905	28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동구 (152,341명)	7	1	578	18	2	사무과(전문위원 / 의사담당)
	북구 (216,567명)	9	3	702	18	3	사무과(전문위원 / 의사담당 / 의정담당)
	울주군	10	3	1,065	29	2	의정 / 의사

경기도	(219,428명)							
	의정부시 (465,019명)	13	3	1,464	35	5	사무국(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의회홍보팀 / 정책지원팀)	
	수원특례시 (1,196,894명)	37	5	3,805	70	8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의정팀, 인사채용팀, 의사팀, 속기팀, 홍보팀, 입법팀, 정책예산팀	
	용인특례시 (1,076,098명)	32	5	3,310	75	8	의정담당관, 의정팀, 의사팀, 인사운영팀, 의정기록팀, 입법지원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고양특례시 (1,075,898명)	34	5	3,445	68	8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의정팀, 인사팀, 의회홍보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관리팀	
	화성시 (939,302명)	25	5	2,921	53	6	전문위원,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광명시 (280,270명)	11	3	1,183	28	5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전문위원	
	양주시 (265,155명)	8	0	1,073	28	6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동두천시 (88,820명)	7	0	683	23	5	전문위원, 의정, 의사, 의회홍보, 입법정책	
	과천시 (81,143명)	7	0	595	18	3	전문위원, 의정, 의사	
	의왕시 (158,242명)	7	0	755	21	5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구리시 (187,620명)	8	1	812	27	5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오산시 (229,370명)	7	0	810	23	4	사무과(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전문위원	
	군포시 (262,587명)	9	3	997	23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입법홍보팀)	
	하남시 (329,559명)	10	3	1,085	28	5	사무국(의정팀 / 의사팀 / 홍보팀 / 정책지원팀 / 전문위원)	
	여주시 (114,344명)	7	0	986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이천시 (223,525명)	9	3	1,213	24	5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홍보기록팀)	
	안성시 (189,322명)	8	1	1,107	20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김포시 (486,008명)	14	3	1,627	35	5	사무국(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행정복지팀, 도시환경팀)	
	광주시 (391,760명)	11	3	1,330	25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포천시 (143,690명)	7	1	1,055	26	4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연천군 (41,639명)	7	0	720	16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양평군	7	0	940	21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124,822명)						팀, 홍보정책팀)
	가평군 (62,125명)	7	1	794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가 이 연 북 도	동해시 (88,741명)	8	0	705	21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태백시 (38,720명)	7	0	629	16	2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삼척시 (62,937명)	7	0	886	22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정선군 (34,323명)	7	0	661	16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속초시 (82,168명)	7	0	704	19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고성군 (27,353명)	7	0	547	21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소통팀)
	양양군 (27,729명)	7	0	539	17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인제군 (32,003명)	7	0	570	18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담당, 의정담당)
	홍천군 (67,346명)	8	0	807	18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횡성군 (46,409명)	7	0	586	16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영월군 (37,430명)	7	0	643	17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평창군 (40,645명)	7	0	802	20	3	전문위원, 사무과(의정팀, 의사팀)
	화천군 (23,113명)	7	0	475	19	3	전문위원, 사무과(의사담당, 의정담당)
	양구군 (21,179명)	7	0	472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철원군 (41,490명)	7	0	684	18	4	전문위원, 사무과(의정, 의사, 입법지원)
새 내 선 과 나	제천시 (130,645명)	13	3	1,244	29	5	사무국(전문위원, 총무팀, 의정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단양군 (27,737명)	7	0	648	21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영동군 (44,353명)	8	2	718	20	4	사무과(전문위원, 정책홍보팀, 의정팀, 의사팀)
	보은군 (31,073명)	8	2	679	20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홍보팀)
	옥천군 (49,011명)	8	2	734	23	4	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안팀, 정책지원팀)
	음성군 (91,339명)	8	0	944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진천군 (85,751명)	8	0	818	19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충청남도	괴산군 (36,527명)	8	2	741	21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증평군 (37,435명)	8	2	470	20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공주시 (102,295명)	12	3	1,118	25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보령시 (96,068명)	12	3	1,124	23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서산시 (176,052명)	14	3	1,231	28	5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태안군 (60,866명)	7	0	738	19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금산군 (50,150명)	7	3	686	18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지원팀)
	논산시 (110,833명)	13	3	1,110	26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계룡시 (46,478명)	7	0	380	15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당진시 (170,097명)	14	3	1,170	31	5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
	부여군 (61,252명)	11	3	881	23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서천군 (49,242명)	7	2	744	20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지원팀)
	홍성군 (97,345명)	11	3	913	24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청양군 (30,077명)	7	1	667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예산군 (78,529명)	11	3	805	20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전라북도	김제시 (81,578명)	14	3	1,142	40	5	의회사무국(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완주군 (97,304명)	11	3	894	31	4	의회사무국(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전문위원)
	진안군 (24,532명)	7	2	637	18	3	의사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무주군 (23,314명)	7	1	537	22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장수군 (21,036명)	7	2	571	24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임실군 (26,053명)	8	2	652	26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순창군 (26,751명)	8	2	636	18	3	의사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고창군 (51,737명)	10	3	849	26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
	부안군 (51,737명)	10	3	735	25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49,390명)						홍보팀, 정책지원팀)
전국구	광양시 (152,327명)	14	3	1,103	32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담양군 (45,386명)	9	3	676	22	5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입법지원담당)
	장성군 (42,518명)	8	3	620	18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곡성군 (26,893명)	7	2	613	16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구례군 (24,359명)	7	0	526	16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고흥군 (61,242명)	12	3	762	26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보성군 (37,785명)	8	3	610	16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회행정팀, 정책기획팀, 의정지원팀)
	화순군 (61,310명)	10	3	773	26	4	사무과(전문위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정책지원팀)
	장흥군 (35,119명)	7	1	649	19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강진군 (32,748명)	8	3	669	21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홍보팀, 의사팀)
	완도군 (46,805명)	9	3	728	22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해남군 (64,735명)	11	3	874	21	4	전문위원실, 사무과(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
	진도군 (28,998명)	7	0	609	16	3	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팀)
	영암군 (52,404명)	8	3	755	19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무안군 (90,410명)	9	3	779	28	5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
	영광군 (51,926명)	8	3	722	17	4	의회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전문위원실
	함평군 (30,604명)	7	3	606	18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신안군 (38,074명)	9	3	804	22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정책지원팀, 위원회팀)
전지역	울릉군 (9,090명)	7	0	401	14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영주시 (100,208명)	14	3	1,130	28	5	사무국(전문위원실, 총무팀,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영천시 (100,253명)	12	3	1,097	21	4	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정홍보담당)
	문경시 (69,052명)	10	3	981	23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예천군 (55,450명)	9	0	753	14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경상 지역	경산시 (266,843명)	15	3	1,293	29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팀, 의 사홍보팀, 정책지원팀)
	청도군 (41,836명)	7	2	636	14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 팀)
	고령군 (30,190명)	7	0	590	14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 팀)
	성주군 (42,207명)	8	0	687	12	3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사팀, 의정 팀)
	칠곡군 (110,951명)	10	3	845	20	3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팀, 의 사팀)
	군위군 ( )	7	0	539	16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성군 (50,165명)	13	3	859	18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청송군 (24,033명)	7	0	523	16	3	의회사무과(의사팀, 의정홍보팀, 전 문위원실)
	영양군 (15,736명)	7	1	495	16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영덕군 (34,154명)	7	0	600	13	2	사무과(전문위원, 의사담당)
	봉화군 (29,753명)	8	0	681	15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울진군 (46,681명)	8	0	709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통영시	13	3	1,048	27	5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 팀, 기획총무팀, 산업건설팀)
	창원특례시 (1,010,820 명)	45	5	5,265	68	6	사무국(총무팀, 의사가록팀, 관리팀, 의회홍보팀, 입법예산팀, 전문위원)
	고성군 (48,488명)	11	3	738	21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
	사천시 (109,009명)	12	3	990	22	4	사무국(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밀양시 (102,239명)	13	3	1,086	26	3	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 당)
	의령군 (25,587명)	10	3	628	16	3	의회사무과(의정팀, 의사팀, 전문위 원실)
	함안군 (60,323명)	10	3	747	18	3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 사담당)
	창녕군 (57,275명)	11	3	806	20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하동군 (41,784명)	11	4	714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 당)
	남해군 (40,946명)	10	3	683	17	4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의정팀, 의사 팀, 정책지원팀)
함양군 (37,038명)	10	3	651	17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 당)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  
및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산청군 (33,800명)	10	3	650	16	4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입법지원담당)
거창군 (60,150명)	11	3	778	22	3	사무과(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합천군 (41,354명)	11	3	784	22	4	의회사무국(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

## 참고문헌

- 강민제·윤성이, 2007. 선거구획정과 선거결과의 왜곡: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2호.
- 강신구, 2017. “민주화 30년: 지방자치의 성숙과 과제.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강신구, 2018. 지방분권과 선거: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의 문제. 『전국동시지방선거 외부평가: 선거제도, 과정, 관리, 지역별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8권 제3호.
- 강휘원, 20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방안,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 김도중·김형준, 2003.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 김태일·임채홍, 2008. Taagepera & Shugart 공식의 재해석에 의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의 국제비교, 의정연구, 제14권 제1호.
- 명성준, 2019. 지방분권과 지방선거구 획정: 영국 지방선거구 획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 신원득, 2003. 지방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역량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 오산시의회, 1995. 제1대 의회의정책서
- 오산시의회, 2022. 제8대 의회의정책서
- 윤종빈, 2006. 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경기도 사례 분,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2호, 2006.
- 정병기, 2014. 주요국의 지방선거제도와 공천방식 비교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 제6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은주, 2018. 2018 대만의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분석. 국제·지역연구 28(1). p121-153.
- 최선·김현, 2023.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방안: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1집 4호.
- 하세현, 2019. 일본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실증분석과 사례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겨레. 2016. “쓰위의 나라” 대만을 이해하기 위한 8가지 핵심



한국정치학회, 202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International IDEA, Electoral System Design: The New International IDEA Handbook, Stockholm, Swede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강릉시의회 누리집(<https://www.gncl.go.kr>)

강릉시청 누리집(<https://www.gn.go.kr>)

경주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gyeongju.go.kr>)

경주시청 누리집(<https://www.gyeongju.go.kr>)

광주시의회 누리집(<https://www.gjcouncil.go.kr>)

광주시 누리집(<https://www.gjcity.go.kr>)

군포시의회 누리집(<https://www.gunpocouncil.go.kr>)

군포시청 누리집(<https://www.gunpo.go.kr>)

동두천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ddc.go.kr>)

동두천시청 누리집(<https://www.ddc.go.kr>)

여수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yeosu.go.kr>)

여수시청 누리집(<https://www.yeosu.go.kr>)

오산시의회 누리집([www.osancouncil.go.kr](http://www.osancouncil.go.kr))

오산시청 누리집(<https://www.osan.go.kr>)

웅진군의회 누리집(<https://council.ongjin.go.kr>)

웅진군청 누리집(<https://www.ongjin.go.kr>)

의왕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uiwang.go.kr>)

의왕시청 누리집(<https://www.uiwang.go.kr/>)

하남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hanam.go.kr>)

하남시청 누리집(<https://www.hanam.go.kr>)